※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 의 사 항

약관의 제 조항들은 담보사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권리, 의무, 그리고 보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의깊게 약관내용을 읽으십시오. 약관의 용어중 피보험자는 신고란의 피보험자를 말하고 회사는 이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조항에서 자격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를 뜻합니다.

선이 굵은 필체로 쓰인 단어, 어구, 보험목적물등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약관에 쓰여 있습니다. 증권에 첨부된 배서나 신고란은 보험개시부터 효력이 발효됩니다. 차후 발행될 배서는 배서증권상에 효력발생 일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및 문화재단을 위한 보험 보통약관

제 1 순위 피보험자
신고란에 1 순위로 기재된 개인 또는 단체는 전체 보험료를 우선적으로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 순위 피보험자는 다른 피보험자를 대표해 계약해지 통보를 회사로부터 주거나 받으며 발생되는 환급 보험료를 수령합니다.

해 지
제 1 순위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전체 또는 개별담보사항을 언제든지 회사에 서면통지하거나, 증권을 반송하여 보험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해지일 60 일 이전에 (보험료 미납시에는 20 일) 제 1 순위 피보험자에게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보험계약 또는 계약의 개별담보사항을 해지 가능합니다. 회사의 해지통보는 제 1 순위 피보험자의 최근 주소지로 우편송부하며, 여기에 계약종료일을 명기합니다. 우편송부는 해지통보의 증거로써 충분합니다. 제 1 피보험자에 대한 통보는 모든 피보험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경과보험료는 일할계산방식을 적용해 산정하며 미경과보험료는 조속히 환급하여 드립니다.

계약 미갱신
회사가 본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못할 시, 회사는 신고란에 기재된 제 1 순위 피보험자에게 적어도 계약만기일 60 일 이전에 서면상으로 사전통보를 합니다. 우편송부는 미갱신 통보의 증거로써 충분합니다.

배 서
계약사항은 증권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며 서면 배서에 의해서만 변경됩니다. 배서에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문서와 기록서의 검사
회사는 보험기간중과 계약만기 이후 3 년까지는 언제든지 보험계약과 관련한 문서나 기록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조사
아래사항은 회사의 권리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1. 평시의 검사와 조사
2. 회사가 발견한 제 조건에 대한 보고
3. 보험내용 배서사항 권고
그러한 감사, 조사, 보고, 또는 권고는 단지 보험과 관련 있으며 보험료의 변동을 가져옵니다. 회사가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나 공공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개인이나 단체의 임무를 대신 떠맡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아래사항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1. 보험조건의 안전성과 양호성;
2. 보험조건이 법률, 규정, 양식 또는 표준관행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본 조항은 회사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 산정기관 및 권고기관, 보험요율협회 또는 보험감사, 조사, 보고, 권고를 행하는 유사 단체에도 적용됩니다.

권리와 의무 양도
본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사망시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양도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피보험자의 법적 상속인에게로 양도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법

적 상속인으로서의 의무범위 내에서 행동하고 있는 동안에 한합니다. 피보험자는 법적 상속인이 선임될 때까지는 피보험자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그러한 권리와 의무는 양도됩니다.

은폐 또는 허위고지
피보험자가 본 계약과 관련된 실질적 사실이나 정황을 고의적으로 은폐 또는 허위고지할 시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법일치
보험증권의 어떠한 조건도 보험증권이 발행되는 대한민국의 적용법규와 상충될 때에는 법규에 일치되도록 수정됩니다.

문장 단락의 표제
본 보험증권 및 배서를 구성하는 많은 문장단락의 표제는 편리용 또는 참고용으로 삽입되며 관련 제조항내용에 제한을 가하거나 또는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재물 및 이익상실금 일반조항

담보지역
본 보험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을 경우나 운송중 일때 적용됩니다.

운송자 또는 보관자 부담보
피보험자를 제외한 보험 목적물을 보관하고 있는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본 증권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관대조항
회사가 보험기간 중 (또는 효력 발생일자 45 일 이전에)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도 계약 사항을 확장 담보하는 변경사항을 수용한다면, 피보험자는 자동적으로 담보확장의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일반조항

담보지역
본 보험은 어느 지역이나 담보합니다. 그러나 손해로 인한 최초의 소송은 대한민국의 영내 점유시 내에서 제기되어야 합니다.

보험료 정산
a. 회사는 규정과 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b. 보험증권에 명기된 보험료는 납입보험료로서 단지 예치보험료입니다. 정산기간 종료시 회사는 그 기간동안의 경과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정산보험료는 보험료를 납부할 제 1 순위 피보험자에게 통보됩니다. 만일 보험기간동안 예치보험료와 정산보험료의 합계가 경과보험료보다 많다면, 회사는 제 1 순위 피보험자에게 초과분을 환급합니다.
c. 제 1 순위 피보험자는 보험료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회사의 요청시 사본을 회사로 송부해야 합니다.

피보험자 분리

보험금액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본 보험에서는
1. 각각의 개별 피보험자가 단일한 피보험자처럼 적용됩니다;
2. 손해보상청구나 소송이 제기되는 각각의 피보험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서 어떤 내용도 제 1 순위 피보험자에게 특별히 부여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재물 및 이익상실금 손해조항

사고 및 클레임 발생시 피보험자 의무
1. 가능한 조속히 회사에 사고발생 내역을 통지합니다. 이때 사고 발생 시각과 장소 및 증인의 성명과 주소와 세부내역을 회사에 통보해야합니다. 영업이익보험조항에서 손해발생시는 회사비용으로 전화나 전보를 통해 통보해야합니다.
2. 사고조사, 클레임의 처리 및 해결시에 회사에 협조합니다.
3. 회사의 사고조사 필요시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내용에 대해 답변 피보험자가 날인합니다.
4. 사고 조사에 필요한 기록물이나 보고서를 얻을 수 있도록 회사에 허가합니다.
5. 법 규정을 위반 했을 시에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6.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재물을 보호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가능하다면 손상 재물을 비손상 재물과 격리시킵니다. 그러한 보호와 분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수리를 하며, 수리비 영수증은 클레임 해결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금액한도내에서 적용합니다.
7. 사고 발생 90 일 이내에 사고 증명서를 회사 혹은 회사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게 제출합니다.
8. 가능한 신속하게 피보험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상화 시켜야합니다.
직원이 아닌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음으로 해서,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회사 선택
1. 보험이 담보하는 손실 또는 손괴 발생시 회사는 아래사항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a. 손실 또는 손괴된 재물의 가액을 지불합니다.
 b. 수리된 품목의 가치하락 분에 손실 또는 손괴된 재물의 수리 또는 대체 비용을 추가해 지불합니다.
 c. 합의 또는 감정 가격으로 그 재물을 취득합니다.
 d. 동종, 동질의 타 재물로 손실 또는 손괴된 재물을 대체합니다.
2. 사고조사, 클레임처리 및 해결시 회사에 협조합니다.
3. 회사는 사고통보서를 접수한 지 30 일 이내에 회사의 결정내용을 통지합니다.
4.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닌 손실 또는 손괴된 재물의 원 소유주에게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원 소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 소유자의 재물에 대한 회사를 상대로한 피보험자의 클레임 해결에 갈음합니다. 회사는 담보물의 경제적 가치 이상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5. 회사는 재물 소유자의 클레임으로 부터 야기된 법적 소송에서 피보험자를 변호할 변호사를 회사의 비용으로 선임합니다.

보험금 지급
1. 피보험자가 본 보험의 모든 조건에 동의하고서
2. a. 회사가 손해액에 대해 피보험자와 합의시, 또는
 b. 손해 보상액이 정해 졌을 때,
회사는 사고통보서 접수후 30 일 이내에 담보되는 손실이나 손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현금과 유가증권

회사는,
1. 피보험자가 무장 경호 차량회사와 맺은 계약
2. 무장 경호 차량회사가 가입한 보험
3. 타인이 가입한 증권
으로부터 피보험자가 보상받는 금액을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시 공제합니다.

감정
회사와 피보험자가 손해액에 합의할 수 없을 때, 양측은 각기 손해액 감정요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피보험자는 유능하고 편견없는 감정인을 각각 선임합니다. 선임된 2 명의 감정인은 심판관 1 명을 선임합니다. 만일 2 명의 감정인이 심판관 선임에 합의할 수 없을 때, 각자는 재판권을 지닌 법원에 그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감정인은 순수입액과 업무활동 비용, 재물가액과 손해액을 작성합니다. 양측 감정인의 작성내용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들은 각자의 진술서를 심판관에게 제출합니다. 심판관이나 감정인에 의한 합의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회사와 피보험자는 감정인 및 심판관의 비용을 동등하게 분담합니다.
회사는 감정평가에 따를지라도, 손해액지급을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타보험
피보험자가 본 계약에서 담보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타보험 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회사는 손해에 대한 모든 보험증권에서 보상하는 전체 보상액에 비례하여 적용되는 본 증권의 비례 보상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재물복원
손실 또는 손괴된 재물에 대한 보험금 지급후에 피보험자 또는 회사에 의해 그 재물이 회수되었을 때, 복원한 자는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재물이 회수되었을 때 피보험자는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회수된 재물을 간직하며 지급된 보험금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2. 지급보험금을 계속 갖는 대신 회사가 회수된 재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회수재물이 잔존가치가 있거나, 대위권 행사로 회수한 금액이 있다면 회사는 다음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상환합니다:
1. 공제금액;
2. 공동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지불한 벌금;
3. 일부보험으로 인한 부담보 손해액.
손실 또는 손괴된 재물의 회수 및 대위에 따른 제비용은 상환금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피보험자와 동등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가 간직하기로 선택한 재물이 수리를 필요로 할 때, 회사는 손실 또는 손괴된 재물에 대해 보험금액을 한도로 수리비를 지불합니다.

대위권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권리를 피보험자가 가지게 되었다면, 이 권리는 회사가 지급한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로 양도됩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는 회사의 권리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하며, 손해발생 이후 회사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다음에 한하여 피보험자는 서면으로 타인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의 부보된 재물 또는 부보된 이익 상실금에 대한 손해발생 이전이거나;
2. 손해사고시 타인이 아래 중 하나라도 속한다면, 피보험자의 부보된 재물 또는 부보된 이익상실금 손해사고 이후에라도 피보험자는 서면으로 타인에 대한 피보험자 자신의 권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a. 본 보험에 의해 부보된 자;

b. 아래의 기업
(1)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기업; 혹은,
(2) 피보험자의 기업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 기업
c. 피보험 목적에 관한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피보험자의 임차인
이 권리는 피보험자의 보험계약 내용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법적대응
보험의 모든 조건에 충분히 따르지 않거나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최종 법원의 판결로 확정될 때까지 또는 회사가 책임금액에 서면으로 동의하기 전까지 피보험자는 어떠한 법적대응을 회사에게 취해서는 안됩니다.
이 증권하에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회사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확정하도록 떠넘길 권리는 없습니다.

위부
회사가 명확히 합의하지 아니하면, 피보험자는 재물을 회사로 委付할 수 없습니다.

보험수익자 - 건물제외
피보험사와 신고란에 기재된 보험수익자가 담보재물에 대해 모두 피보험이익을 지닌다면 회사는:,
1. 피보험자와 손해액을 조정합니다;
2. 손실 또는 손괴 클레임에 대해서 공동으로 피보험이익이 있을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모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배상책임보험 손해조항

파산
피보험자가 파산하거나 지불불능인 상태라도 본 보험하의 회사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고,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발생 시 피보험자의무
a. 피보험자는 소송으로 비화될 손해사고에 대해 회사에 즉시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사항으로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지의 내역;
(2) 부상자와 목격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3)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와 재물손괴의 정도 및 발생장소 입니다.
사고 발생의 통보가 손해배상청구의 통보는 아닙니다.
b. 손해배상청구를 받으면 피보험자는 다음을 행합니다:
(1) 즉시 손해배상청구의 주요내용과 접수일자를 기록하고;
(2) 회사에 신속히 통지합니다.
피보험자는 청구된 손해배상청구를 서면으로 회사에 신속히 접수시켜야 합니다.
c. 피보험자와 여타 관련 피보험자는 다음을 행하여야합니다:
(1)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과 관련된 요구서, 통지서, 소환서 또는 법률 문서의 사본을 회사에 즉시 보내야 합니다;
(2) 기록물과 여타 정보를 회사가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과 관련한 조사, 해결 또는 방어에 있어 회사와 협조해야 합니다.
(4) 담보되는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괴로 인해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에게 법률 집행시 회사의 요청에 따라 도와야 합니다.
d. 응급조치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사전동의가 있기전에 피보험자가 임의로 보상하거나, 책임을 부담하

거나, 제비용을 지불해서는 안됩니다.

법적대응
보험의 모든 조건에 충분히 따르지 않거나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최종 법원의 판결로 확정될 때까지 또는 회사가 책임금액에 서면으로 동의하기 전까지 피보험자는 어떠한 법적대응을 회사에게 취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회사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확정하도록 떠넘길 권리는 없습니다.

타보험
신체장해, 재물손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 조항에서 담보되는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여타 유효한 보험이 피보험자에게 있다면 회사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한정됩니다:
a. 기초보험
본 보험은 아래 b 사항이 적용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초보험입니다. 타보험이 기초보험이 아니라서 본 보험이 기초보험이면, 회사의 책임금액은 타보험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아래 서술된 c 방법으로 여타 보험과 함께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b. 초과보험
(1) 만일,
(a) 본 보험의 신고란에 소급일자가 없을 경우; 혹은,
(b) 타보험이 본보험의 신고란에 기재된 소급일자 이후, 계속되는 보험기간을 가진 보험일 경우;
타보험은 본 보험의 신고란에 기재된 보험개시일 이전에 유효하며 배상청구 기준을 제외한 보험으로 신체장해나 재물손괴를 담보하는 타보험일 경우,
(2) 타보험이 피보험자의 작업에 대한 화재보험 및 확장위험담보,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및 이와 유사한 보험일 경우;
(3) 타보험이 피보험자에게 임대된 구내에 대한 화재보험일 경우;
(4) 항공기, 자동차, 선박 면책조항에 제한을 받지않는 한도내에서, 사고가 항공기, 자동차, 또는 선박의 정비 또는 사용에 기인한다면,
본보험은 타보험이 기초보험, 초과보험, 조건부 보험 또는 기타보험 여부를 불문하고서 타보험의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초과보험이 됩니다. 본 보험이 초과보험일 때, 회사는 신체장해, 재물손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 담보사항에 대해 타보험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해야 할 책무를 지지 않습니다. 타보험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회사가 책무를 떠 맡게 되나 모든 타 보험회사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보험이 타보험의 초과보험일 때, 회사는 전체 손해액 중 회사 분담분만 지급합니다.
회사 분담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 보험계약이 없었을 경우의 손해액에 대해 보든 타보험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 합계액의 초과분.
(2) 모든 타보험의 공제금액이나 자기부담금액의 합계액 초과분.
회사는 본 초과보험 조항에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본 보험의 신고란에 기재된 보험금액의 초과분으로 명확하게 적용할 수 없는 잔여손해에 대해 타보험사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c. 분담방식
모든 여타 보험이 공동 분담방식을 취한다면, 회사도 역시 이 방식을 따를 것입니다. 이 경우, 각 보험회사는 각자의 보험금액이 완전 소진되거나 잔여 손해액이 없을 때까지 두가지 중에서 하나가 먼저 도래할 때까지 공동부담합니다. 만일 타보험회사가 공동분담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본 보험의 보험금액 수준까지 부담합니다. 이 방식을 취할 경우 각 보험회사의 분담분은 보험회사의 전체 보험금액에 비례하는 자사의 보험금액 비율로 산출된 비례금액입니다.

대위권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권리를 피보험자가 가지게 되었다면, 그러한 권리는 회사로 양도됩니다. 피보험자는 손해사고 이후 이 양도 권리를 손상케 해서는 안됩니다. 회사의 요구에 대해서 피보험자는 이 권리가 회사로 양도되어 유효할 수 있도록 회사를 도와야 됩니다.

중재
회사는 중재자에 선임과 중재 진행과정에 있어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습니다.

재물 및 이익상실금 정의조항

본 증권에 사용된 보험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가 : 손괴된 재물의 수리비용 또는 동종, 동질의 제품으로의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서 감가상각을 차감한 비용.

부대비용 : 손실, 손괴 또는 파손된 보험목적물을 재생, 수리, 대체, 재생산시키는 데 발생된 추가비용

오염물 : 오염물은 이물질과 섞이거나 접촉하여 그 결과로 인한 불순물을 의미합니다.

부속업무시설
피보험자가 의존하는 타인이 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합니다.
1.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에게 물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시설, 그러나 이 경우 피보험자나 타인에 대한 공익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여시설)
2.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수용하는 시설. 그러나 이 경우 공익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용시설)
3. 판매 계약을 맺은 고객에게 전달할 생산물을 제조하는 시설; (제조시설)
4. 고객을 피보험자의 사업에 끌어들일 시설. (유도시설)

완제품 : 피보험자가 제조한 동산. 피보험자가 이익상실금 조항에서 담보되는 소매대리점의 구내에서 판매용으로 제작된 동산은 제외됩니다.

업무활동 : 손해 발생 이전에 피보험자 구내에서 진행되는 피보험자의 업무활동.

통상임금
아래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피보험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비용;
1. 대표이사;
2. 임원;
3. 계약직 고용인;
4. a. 직업 분류상이나
 b. 지정 고용인으로
신고란 또는 이익 명세표에서 별도로 면제된 자.

통상임금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임금;
2. 직접적으로 임금과 관련된 피고용인의 후생비;
3.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조합 회비;

4. 근재보험 보험료;

복원기간
복원기간은 아래일자로 부터 기산됩니다.
1. 직접적인 물적손실 또는 손괴가 발생된 날짜;
2. 직접적인 물적손실 또는 손괴가 생기지 않았다면 업무활동이 개시될 수 있었을 날짜
 단, 아래의 손괴로 업무활동 개시가 늦어졌을 경우에 한합니다:
 a. 완공 또는 건축공사중이거나 신축건물의 손괴;
 b. 현존 건물의 개조 또는 증축에 입힌 손괴;
 c. 건축, 개조, 증축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장비, 비품 또는 건물재료의 손괴.

복원기간연장
1. 직접적인 물적 손실 또는 손괴가 발생되지 않았을 정도로 피보험자의 업무활동이 적정하게 복원될 때까지 복원기간은 계속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신고란에 기재된 구내 또는 부속업무시설에서 손실 또는 손괴된 재물의 수리, 재건, 또는 대체를 포함합니다;
 b. (1) 재물의 재건 또는 수리를 규제하는 법령과 법률;
 (2) 손해담보원인으로 손괴되지 아니한 재물의 일부를 해체토록 요구하는 법령과 법률;
 (3) 손해발생시 유효한 법령과 법률;
 상기 법령 또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표준에 부응하도록 타워, 안테나를 제외한 손괴된 재물을 수리 또는 재건하는데 필요한 시간까지 복원기간은 연장됩니다.
2.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기간의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복원기간은 피보험자 또는 타인에게 오염물 및 공해물을 검사, 측정, 정제, 제거, 수용, 화학처리, 독성제거 또는 중성화 시키도록 요구하는 법령이나 법률의 준수로 늘어난 기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해물질
공해물질이란 연기, 증기, 매연, 산 화학물질 및 폐기물질을 포함하여 고체, 액체, 기체 또는 열자극물 또는 오염물을 말합니다. 폐기물에는 재생, 수리, 재이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재물
신고란에 기재된 구내 1,000 피트 이내 있는 재물로서 아래의 해당됩니다:
1. 건물
2. 피보험자의 개인적인 재물
3. 수집물
4. 수목, 잡목, 식물, 잔디 또는 분제류
5. 부속업무시설에 있는 개인적인 재물
6. 완공되었거나 신축중인 신규건물
7. 기존건물의 개조 또는 증축부분
8. (a) 건축, 개조, 또는 증축에 사용된
 (b) 신축 건물의 점유에 수반된 기계, 장비, 비품 또는 건물 재료

원료
동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피보험자가 넘겨받은 상태로 있는 물질

대체비용
손실 또는 손괴된 재물을 수리, 대체하기 위한 충분한 비용을 의미하며, 동일한 사용 또는 용도를 위해서 동일 및 여타 구내에서 그 재물을 실제적으로 수리 또는 대체하기 위해 소요되는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감가상각에 대한 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재조달비용은 신축건물이 재건을 필요로 할 때 배서나 신고란에 기재함으로써 보험목적인 건물은 건물의 기초(바닥)부분까지 확장하여 담보합니다.
피보험자가 손상재물을 수리나 대체하지 않으면 손해사고 일자의 시가로 보상됩니다.
보험금이 시가에 따라 지불되고,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일로 부터 12 개월 이내에 재물을 대체하도록 결정을 내린다면 회사는 보험의 제 조건에 따라 시가와 재조달가액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동산
보관되어 있거나 판매용도의 상품, 원료와 가공처리중인 물질 또는 완제품 동산.포장과 선적을 해 사용되는 부대물품도 포함됩니다.

배상책임보험 정의조항

본 증권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침해
피보험자의 제품, 생산품 또는 서비스 광고과정에서 발생된 다음사항 가운데 하나 또는 다수의 원인에서 발생된 침해
1.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 또는 명예훼손하거나 개인이나 단체의 제품, 생산품 또는 서비스를 중상하는 광고내용의 구두상의 또는 지면상의 공표
2. 개인의 사생활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구두 또는 지면공표
3. 광고 아이디어나 업무스타일의 도용
4. 광고물, 제목 또는 슬로건의 저작권 침해

자동차
장착된 기계나 장비를 포함한 육로 주행 자동차, 트레일러 또는 공공도로 주행을 목적으로 제작된 세미트레일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동성 장비는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체장해
신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 개인이 입은 신체 상해나 질병.

방어비용
손해배상청구나 소송과 관련한 조사, 해결, 방어에 쓰인 비용으로서 아래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1. 변호사 비용과 여타 소송비용
2. 회사가 방어하는 소송에서 재판청구시 필요한 보증보험료
3. 신체상해배상책임담보에 적용되는 차량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와 교통법규 위반시 요구되는 US$2,000 까지의 보석금
4. 보험금액 한도내의 보석보증 비용
5.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의 조사, 방어와 관련한 회사의 원조요청으로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타당한 비용. 직장업무이탈로 인한 실질소득상실에 대해서는 하루당 $150 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6. 소송으로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세금
7. 배상금 판결에서부터 보험금액 조항에 기초한 가용의 판결금을 실질지급 또는 법원에 예치시킬 때까지의 법원 총판결금에 대한 이자.

방어비용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아래를 제외한 회사나 피보험자 고용인의 임금이나 비용
 a. 특정의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에 고용된 변호사의 수수료, 임금 그리고 비용
 b. 상기 5번에 기재된 비용
2. 회사가 공용한 독립 손해사정인의 수수료와 비용

손상재물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혹은 피보험자의 다음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유형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1. 결점, 불충, 부적절, 위험하다고 알려졌거나, 생각되어지는 피보험자 생산물 또는 작업과 결부되거나
2. 피보험자의 계약 또는 합의 조건의 불이행
단, 그러한 재물은 다음에 의해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생산물 혹은 피보험자의 작업의 수리, 대체, 정비, 해체
2. 피보험자의 계약서 또는 합의서 조건의 이행

부보계약
다음을 의미합니다:
1. 구내의 임대
2. 부가계약
3. 차량도로나 인도의 교차와 관련한 地役權 및 사용합의
4. 철길 또는 철길 150 미터 이내에서 건설 또는 해체작업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 여타의 地役權합의
5. 지방자치단체의 작업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상
6. 승강기 보수 합의
7.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발생 이전에 체결된 계약서나 합의서에 의해 업무와 관련한 제 3 자인 개인이나 단체에 끼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인해 피보험자가 제 3 자에 대한 불법행위 배상책임을 부담케 된 계약이나 합의서의 일부. 불법행위 배상책임은 계약서나 합의서가 없는 상태에서 법률에 의해 부가되는 배상책임입니다
8. 부보계약은 다음에 의해 야기된 신체장해나 물적손괴에 대한 건축사, 기술사 또는 측량사 보상 담보의 계약이나 합의 부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a. 지도, 도면, 의견, 보고, 조사, 지시변경, 디자인 등의 준비, 허가 혹은 준비나 허가의 실패
 b. 신체장해나 물적 손해의 중대원인이 되는 지시나 명령의 하달 또는 불하달

선적 또는 하역
다음과 같은 재물의 취급을 말합니다:
1. 접수된 장소로부터 선적 항공기, 선박, 또는 전동차까지의 운송
2. 항공기, 선박 또는 자동차에 의한 운송
3. 항공기, 선박 또는 자동차에서부터 최종 하역 장소까지의 운송
그러나 선적 또는 하역은 손수레를 제외하고서 항공기, 선박 또는 자동차에 장착되지 않은 기계장비에 의한 재물의 운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치료비
다음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1. 사고시의 응급처치
2. 보철장치를 포함하여 필요한 의료, 외과치료, X-ray 촬영, 치과치료
3. 앰블렌스 후송, 병원, 전문간호와 장제

이동차량
장착된 기계나 장비를 포함한 아래 유형의 내륙 운송차량을 의미합니다:

1. 불도저, 농장기계, 지게차, 그리고 원칙적으로 공공 도로 주행용이 아닌 차량
2. 피보험자가 임대 또는 임차한 시설내 혹은 근처에서만 전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3. 서행 차선을 주행하는 차량
4. 차체 동력의 유무에는 상관없이 아래 장비에 주동력을 제공하는 차량
 a. 파워크레인, 셔블, 로더, 구멍파는 기구 또는 천공기
 b. 그레이더, 스크레이프 또는 로울러와 같은 도로건설 또는 표면 포장용 장비
5. 상기 1,2,3 혹은 4 에 속하지 않는 차량으로 자체 동력 없이 아래 유형의 영구 장착된 장비에 의해 주로 동력을 전달받는 차량:
 a. 분무용, 용접용, 건물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 탐사용의 장비를 포함한 에어 콤푸레셔, 펌프 그리고 발전기
 b. 근로자를 높이 들어 올리는 체리픽커 또는 이와 유사한 장비
6. 사람이나 화물의 운송용도가 아닌 타 목적으로 사용되며 상기 1,2,3,4 번에 속하지 않는 차량. 그러나, 아래에 해당되는 영구 장착장비를 지닌 자체 동력의 차량은 이동 차량이 아닌 자동차로 간주됩니다:
 a. 아래 용도를 주목적으로 제작된 장비:
 (1) 제설작업
 (2) 도로 건설이나 표면 포장이 아닌 도로 정비용
 (3) 도로 청소
 b. 자동차나 트럭차대에 장착되거나 작업원 승강용으로 사용되는 체리픽커나 그와 유사한 장치;
 c. 분무용, 용접용, 건물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 탐사용의 장비를 포함한 에어 콤푸레셔, 펌프 그리고 발전기

사고
신체장해나 재물손괴를 초래하는 동일한 일반적인 위험 상태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될 것을 포함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인격침해
피보험자의 광고활동이외에 업무수행중에 발새오딘 아래의 사항으로 인한 신체장해가 아닌 침해:
1. 불법체포, 구금, 또는 감금;
2. 악의성 있는 고소;
3. 개인 점유의 방, 거주지 또는 구내로의 불법침입 또는 이로부터의 강제퇴거;
4.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개인이나 단체의 상품, 생산물 또는 서비스를 비방하는 구두 또는
 서면상의 공표;
5. 개인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구두 또는 서면상의 공표.

생산물-완성작업후 위험
1. 생산물-완성작업후 위험은 아래 사항을 제외한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을 벗어난 구내에서 피
 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작업으로부터 야기된 모든 신체장해와 재물손해를 포함합니다:
 a.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생산물;
 b. 미완성이거나 폐기되지 않은 작업;
2. 피보험자의 작업이란 아래 3 가지중 하나가 먼저 도래하면 완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a. 피보험자의 계약서에서 요구된 모든 작업이 완성되어 졌을 때;
 b. 피보험자의 계약서 상 한 장소 이상에서의 작업을 요할 때, 그 장소에서 행해질 모든 작업의 만료시
 c. 도급업자나 하도급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작업이 끝나 본래의

목적
대로 가동될 때
완성된 작업이 서비스, 보수, 수정, 수리 또는 대체 필요시에도 작업이 완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이 위험은 다음 사항으로 인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a. 선적물의 차량 선적, 하역으로부터 발생된 장해나 손해를 제외한 재물의 운송
b. 도구, 미설치된 장비, 폐기 또는 미사용의 원료
c. 회사의 매뉴얼에 포함된 생산물이나 완성작업 명세서상의 생산물 또는 업무

재물손괴
1. 유형 재물이 입은 모든 물리적 손상을 의미하며 손상된 재물의 사용상실 손해를 포함합니다
2. 실제적으로 손상되지 아니한 유형재물의 사용손실

소송
본보험이 담보하는 신체장해, 재물손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로 인한 손상으로 인한 민사 소송절차. 소송은 중재절차도 포함하는데 피보험자는 회사의 동의를 구하고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생산물
1. a. 피보험자
b. 피보험자 이름으로 처리된 거래
c. 업무나 자산에 대해 피보험자가 취득한 개인 또는 단체
에 의해 제조, 판매, 처리, 분배, 처분된 제품이나 생산물을 의미합니다. 단, 실질재물은 제외합니다.
2. 제품과 생산물과 관련한 용기(차량은 제외), 부품, 원료, 장착된 장비.
피보험자의 생산물은 상기 품목의 조립, 품질, 내구성이나 작동과 관련한 보증과 설명사항도 포함됩니다.
피보험자의 생산물에는 판매되지 않고서 타인이 사용하도록 임차하거나 설치된 자동판매기나 다른 재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작업
1. 피보험자가 수행하거나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수행된 작업 또는 활동;
2. 상기 작업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투입된 원자재, 부속품 또는 장비를 보험합니다.
피보험자의 작업은 상기 품목의 조립, 품질, 내구성이나 작동과 관련한 보증과 설명사항도 포함됩니다.

핵 에너지 면책조항

이 보험은 다음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핵에너지
1. 모든 배상책임 담보에 있어 다음에 의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a. 본 보험의 피보험자가 역시 핵에너지 배상책임보험 연회, 상호 원자력에너지 배상책임 언더라이터,
원자력보험협회나 기타 유관단체가 발행한 증권의 피보험자이거나 또는 그러한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소진되지 않았을 시 그 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와 관련된 상기손해;

b. (a) 1982 년 원자력 에너지법과 이 법의 수정안을 쫓아 재정적 보호를 요청받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b) 본 증권이 없으면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대리점이 여타 개인이나 단체와 맺은 합의서에 의거 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피보험자와 관련되고 위험한 핵물질로 인한 배상책임.
2. 치료비담보에서 어떤 개인 또는 단체의 위험한 핵연료와 핵시설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된 신체장해와 관
련한 비용
3. 모든 배상책임에 있어 다음의 경우, 위험한 핵물질로 야기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a. 핵물질이 피보험자 소유, 운영, 대리권을 지닌 핵시설내에 있거나 그 시설에서부터 방출 또는 분산되
었을 경우
b. 핵물질이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소유, 취급, 사용, 처리, 보관, 운송 또는 처분한 소모 핵연
료 또는 핵폐기물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c. 핵시설의 계획, 건설, 시운전, 가동 또는 사용과 관련해 피보험자가 제공한 서비스, 원료, 부속품,
또는 장비로부터 발생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
그러나 만일 그러한 시설이 대한민국내에 있다면, 본 면책조항 c 는 그러한 핵시설과 핵시설의 재물에 발생한 손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추가정의 조항

위험핵물질 : 방사능, 유독성, 폭발성의 물질을 포함합니다.

핵물질 : 원연료물, 특별 핵물질 또는 그 부산물을 의미합니다.

원연료물, 특별 핵물질 또는 그 부산물 : 1982 년 원자력 에너지 법령과 법 수정 조문에 있는 의미입니다.

소모핵연료 : 사용되었거나 원자로에서 방사되어져 고체나 액체상태로 된 연료성분 또는 연료분자

핵 폐기물
핵 원료 추출공정을 거친 뒤 광물로부터 우라늄이나 산화토륨을 추출하거나 지적함으로써 생긴 폐석을 제외한 부산물을 포함한 기계물. 그리고 아래 핵시설의 1,2 단락 정의에 포함된 핵시설을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함으로 생기는 모든 폐기물을 말합니다.

핵시설
1. 원자로
2. 다음 요도의 장비나 장치:
(a)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동위원소의 분리;
(b) 소모 핵 연료의 처리 또는 이용;
(c) 핵 폐기물의 취급, 처리 또는 포장
3. 특별한 핵 물질의 처리, 제조, 융합에 사용되는 장비나 장치. 그러한 장비나 장치가 놓여 있는 시설에서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물질이 플루토늄 또는 우라늄 233 의 25 그램이나 이들의 화합물 또는 우라늄 235 의 250 그램 이상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4. 핵폐기물의 보관이나 처분용으로 준비된 구조물, 도크, 구덩이, 구내 또는 장소.
그리고 상기 시설에 있어 모든 업무활동이 행해지는 부지와 그러한 업무활동을 위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핵반응
핵분열이 연쇄반응을 일으키거나 또는 연쇄분열을 계속토록 하거나 핵물질을 보관토록 고안, 사용되는 장비.

재물손해 : 방사능으로 인한 모든 형태의 재물오염을 포함합니다.

재물 및 이익상실금 증권조항

변경된 영토의 정의
재물 및 이익상실금 일반조항의 "이 보험이 적용되는 장소" 단락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본 보험은 증권에서 달리 다른 곳을 명시하지 않는 한 전세계 어디에서나 적용됩니다.

제 1 순위 피보험자
신고란에 기재된 개인 또는 단체는 전체 보험료를 우선적으로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 순위 피보험자는 다른 피보험자를 대표해 계약해지 통보를 회사로부터 주거나 받으며 발생되는 환급보험료를 수령합니다.

담보지역
본 보험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을 경우나 운송중 일때 적용됩니다.

해지
제 1 순위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또는 계약의 개별담보사항을 언제든지 회사에 서면통지하거나, 증권을 반송하여 보험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도 보험해지일 60 일 이전에 (보험료 미납 시에는 20 일) 제 1 순위 피보험자에게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보험계약 또는 계약의 개별담보사항을 해지 가능합니다. 회사의 해지통보는 제 1 순위 피보험자의 최근 주소지로 우편송부하며, 여기에는 담보 만료일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우편송부는 해지 통보의 증거로써 충분합니다. 제 1 순위 피보험자에 대한 통지는 모든 피보험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경과보험료는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해 산정하며 미경과보험료는 조속히 환급하여드립니다.

계약미갱신
회사가 본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못할 시, 회사는 신고란에 기재된 제 1 순위 피보험자에게 적어도 계약 만기일 60 일 이전에 서면 상으로 사전통보를 합니다. 우편송부는 미갱신 통보의 증거로써 충분합니다.

배서
계약사항은 증권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서면 배서에 의해서만 변경됩니다. 배서에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문서와 기록서의 검사
회사는 보험 기간중과 계약만기 이후 3 년까지는 언제든지 보험계약과 관련한 분서나 기록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조사
아래사항은 회사의 권리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1. 평시의 검사와 조사
2. 회사가 발견한 제 조건에 대한 보고
3. 보험내용 배서사항권고
그러한 감사, 조사, 보고, 또는 권고는 단지 보험과 관련 있으며 보험료의 변동을 가져옵니다. 회사가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나 공공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개인이나 단체의 임무를 대신 떠맡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보험 조건에 대해 아래사항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1. 보험조건의 안전성과 양호성
2. 보험조건이 법률, 규정, 양식 또는 표준관행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본 조항은 회사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 산정기관 및 권고기관, 보험요율협회 또는 보험감사, 조사, 보고, 권고를 행하는 유사 단체에도 적용됩니다.

권리와 의무 양도
본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사망시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양도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피보험자의 법적 상속인에게로 양도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법적 상속인으로서의 의무범위 내에서 행동하고 있는 동안에 한합니다. 피보험자의 법적 상속인이 선임될 때까지는 피보험자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그러한 권리와 의무는 양도됩니다.

은폐 또는 허위고지
귀하 혹은 피보험자가 본 계약이나 보험계약서의 보상청구와 관련하여 실제사실이나 정황을 고의적으로 은폐 또는 허위 고지할 시 언제든지 이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법 일치
보험증권의 어떠한 조건도 보험증권이 발행되는 대한민국의 적용법규와 상충될 때에는 법규에 일치되도록 수정됩니다.

문장 단락의 표제
본 보험증권 및 배서를 구성하는 많은 문장단락의 표제는 편리용 또는 참고용으로 삽입되며 관련 제조항내용에 제한을 가하거나 또는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관대조항
회사가 보험기간 중 (또는 효력 발생일자 45 일 이전에)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도 계약 사항을 확장담보하는 배서를 수용한다면, 피보험자는 자동적으로 담보확장의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자 또는 보관자 부담보
피보험자를 제외한 보험 목적물을 보관하고 있는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본 증권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재물 및 영업이익 상실금 손해조항

사고 및 클레임 발생시 피보험자 의무
1. 가능한 조속히 회사에 사고발생 내역을 통지합니다. 이때 사고 발생 시각과 장소 및 증인의 성명과 주소와 세부내역을 회사에 통보해야합니다. 영업이익상실 손해조항에 해당하는 손해 발생시 회사 비용으로 전화나 전보를 통해 회사에 통지해야합니다.
2. 사고조사, 클레임의 처리 및 해결시에 회사에 협조합니다.
3. 회사의 사고조사 필요시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내용에 대해 답변 피보험자가 날인합니다.
4. 사고 조사에 필요한 기록물이나 보고서를 얻을 수 있도록 회사에 허가합니다.
5. 법 규정을 위반 했을 시에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6.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재물을 보호하는 보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가능하다면 손상 재물을 비손상 재물과 격리시킵니다. 그러한 보호와 분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수리를 하며, 수리비 영수증은 클레임 해결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금액 한도내에서 적용합니다.
7. 사고 발생 90 일 이내에 사고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8. 가능한 신속하게 피보험자 활동을 전부 또는 일부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직원이 아닌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고발생사실을 통보하지 않음으로해서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 선택
1. 보험이 담보하는 손실 또는 손괴 발생시 회사는 아래사항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a. 손실 또는 손괴된 재물의 가액을 지불합니다.
 b. 수리된 품목의 가치하락 분에 손실 또는 손괴된 재물의 수리 또는 대체 비용을 추가해 지불합니다.
 c. 합의 또는 감정 가격으로 그 재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합니다.
 d. 수리, 개축하거나 동종, 동질의 타 재물로 손괴된 재물을 대체합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부보물의 경제적 가치 이상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사고통보서를 접수한 지 30 일 이내에 회사의 결정내용을 통지합니다.
4.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닌 손실 또는 손괴된 재물의 원 소유주에게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원 소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 소유자의 재물에 대한 회사를 상대로한 피보험자의 클레임 해결에 갈음합니다. 회사는 원소유주에게 담보물의 경제적 가치 이상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재물 소유자의 클레임으로부터 야기된 법적 소송에서 피보험자를 변호할 변호사를 회사의 비용으로 선임합니다.

보험금지급
1. 피보험자가 본보험의 모든 조건에 동의하고서
2. a. 회사가 손해액에 대해 피보험자와 합의시, 또는
 b. 손해 보상액이 정해 졌을 때,
회사는 사고통보서 접수후 30 일 이내에 담보되는 손실이나 손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현금과 유가증권
회사는,
1. 피보험자가 무장 경호 차량회사와 맺은 계약
2. 무장 경호 차량회사가 가입한 보험
3. 타인이 가입한 증권
으로부터 피보험자가 보상받는 금액을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시 공제합니다.

평가
회사와 피보험자가 손해액에 합의할 수 없을 때, 양측은 각기 손해액 감정요구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피보험자는 유능하고 편견 없는 감정인을 각각 선임합니다. 선임된 2 명의 감정인은 심판관 1 명을 선임합니다. 만일 2 명의 감정인이 심판관 선임에 합의할 수 없을 때, 각자는 재판권을 지닌 법원에 그 선임을 요청합니다. 각 감정인은 순수입액과 업무활동 비용, 재물가액과 손해액을 작성합니다. 양측 감정인의 작성내용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들은 각자의 진술서를 심판관에게 제출합니다. 심판관이나 감정인에 의한 합의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회사와 피보험자는 감정인 및 심판관의 비용을 동등하게 분담합니다. 회사는 감정평가에 따를지라도, 클레임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보험
피보험자가 본 계약에서 담보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타보험 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회사는 손해에 대한 모든 보험증권에서 보상하는 전체 보상액에 비례하여 적용되는 본 증권의 비례 보상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수된 재물
손실 또는 손괴된 재물에 대한 보험금 지급후에 피보험자 또는 회사에 의해 그 재물이 회수되었을 때, 회수한 자는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재물이 회수되었을 때 피보험자는 다음을 하여야 합니다.
1. 회수된 재물을 간직하며 지급된 보험금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2. 지급보험금을 계속 갖는 대신 회사가 회수된 재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회수재물의 잔존가액을 지니거나, 대위권 행사로 회수한 금액이 있다면 회사는 다음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상환합니다;
1. 공제금액
2. 공동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지불한 벌금
3. 일부보험으로 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액
손실 또는 손괴된 재물의 회수 및 대위에 따른 제비용은 상환금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피보험자와 동등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가 간직하기로 선택한 재물이 수리를 필요로 할 때, 회사는 손실 또는 손괴된 재물에 대해
보험금액을 한도로 수리비를 지불합니다.

대위권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으로 부터 손해배상 권리를 가진다면, 이 권리는 회사가 지급한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로 양도됩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나 업체는 회사의 권리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하며, 손해사고 이후 회사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1. 피보험자의 부보된 재물 또는 부보된 이익 상실금에 대한 손해발생 이전이거나
2. 손해사고시 타인이 다음 중 어디에라도 속한다면, 피보험자의 부보된 재물 또는 부보된 이익 상실금 손해사고 이후에라도 피보험자는 서면으로 타인에 대한 피보험자 자신의 권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피보험자의 보험계약 내용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a. 본 보험에 부보된 자;
 b. 아래의 기업
 (1)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기업
 (2) 피보험자의 기업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 기업
 c. 피보험 목적에 관한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피보험자의 임차인

법적대응
보험의 모든 조건에 충분히 따르지 않거나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최종법원의 판결로 확정될 때까지 또는 회사가 책임금액에 서면으로 동의하기 전가지 피보험자는 어떠한 법적대응을 회사에게 취해서는 안됩니다.
피보험자는 회사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확정하도록 떠넘길 권리는 없습니다.

委付
회사가 명확히 합의하지 아니하면, 피보험자는 재물을 회사에 委付할 수 없습니다.

보험수익자 - 건물제외
피보험자와 신고란에 기재된 보험수익자가 담보 재물에 대해 모두 피보험 이익을 지닌다면 회사는,
1. 피보험자와 손해액을 조정합니다.
2. 손실 또는 손괴 클레임에 대해서 공동으로 피보험이익이 있을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 모두에게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정의 조항

본 증권에 사용된 보험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가
손괴된 재물의 수리비용 또는 폐기물이 아닐 경우 감가상각을 차감한 동종, 동질의 제품으로의 대체 금액

관리비용
손실, 손괴 또는 파손된 보험목적물을 재생, 수리, 대체, 재현시키는 데 발생된 기타비용

관련업무시설
피보험자가 의존하는 타인이 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합니다;
1.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에게 물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시설.
 그러나 이 경우 피보험자나 타인에 대한 공익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수용하는 시설. 그러나 이 경우 공익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판매 계약을 맺은 고객에게 전달할 생산물을 제조하는 시설
4. 피보험자의 사업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

완제품
피보험자가 제조한 동산을 의미합니다.
피보험자가 이익상실금 조항에서 담보되는 소매대리점의 구내에서 판매용으로 제작된 동산은 제외됩니다.

업무활동
손해발생 이전에 피보험자 구내에서 진행되는 피보험자의 업무활동.

통상임금
아래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피보험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비용
1. 대표임원
2. 임원
3. 계약직 고용인
4. a. 업무분장표상이나
 b. 지정된 고용인으로서
신고란 또는 이익 명세표에서 별도로 면제된 자.
통상임금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임금
2. 직접적으로 임금과 관련된 피고용인의 후생비
3.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조합회비
4. 근재보험 보험료

복원기간
복원기간은 아래일자로부터 기산됩니다:
1. 직접적인 물적손실 또는 손괴가 발생된 날짜
2. 직접적인 물적손실 또는 손괴가 생기지 않았다면 업무활동이 개시될 수 있었을 날짜
 단, 아래의 손괴로 업무활동 개시가 늦어졌을 경우에 한합니다:
 a. 완공 또는 건축공사중이거나 신축건물의 손괴

b. 현존 건물의 개조 또는 증축에 입힌 손괴
c. 건축, 개조, 증축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장비, 비품 또는 건축자재의 손괴.
복원기간 연장은 다음기한 까지 계속됩니다:
1. 직접적인 물적 손실 또는 손괴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의 수준으로 피보험자의 업무활동이 적정하게 복원
될 때; 단,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신고란에 기재된 구내 또는 관련업무 구내에서 손실 또는 손괴된 재물의 수리, 재건, 또는 대체;
b. (1) 재물의 재건 또는 수리를 규제하는 법령과 법률;
(2) 손해담보원인으로 손괴되지 아니한 재물의 일부를 해체토록 요구하는 법령과 법률;
(3) 손해발생시 유효한 법령과 법률;
상기 법령 또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표준에 부응하도록 손실 또는 손괴된 재물을 수리 또는
재건하는데 필요한 시간까지 복원기간은 연장됩니다.
2.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기간의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복원기간은 피보험자 또는 타인에게 공해물질 또는 요염물질을 검사, 측정, 정제, 제거, 수용, 화학처리, 독성제거 또는 중성화 시키도록 요구하는 법령이나 법률의 준수로 늘어난 기간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공해물
고체, 액체, 가스나 열성의 자극물질 또는 오염물질. 연기, 증기, 매연, 가스, 산성물질, 알카리성물질, 화학물질 그리고 폐기물을 포합합니다. 폐기물은 폐기처분, 재순환, 수리 또는 재생되어져야 할 물질을 내포합니다.

재물
신고란에 기재된 구내 1000 피트 이내에 있는 재물로서 아래에 해당됩니다.
1. 건물
2. 피보험자의 개인적인 재물
3. 수집물
4. 수목, 잡목, 식물, 잔디 또는 분제류
5. 부속업무시설에 있는 개인적인 재물
6. 완공되었거나 신축중인 신규건물
7. 기존건물의 개조 또는 증축부분
8. (a) 건축, 개조, 또는 증축에 사용된
(b) 신축건물의 점유에 수반된 기계, 장비, 비품 또는 건물 재료

원료
완제품으로의 전환을 위해 피보험자가 넘겨받은 상태로 있는 물질

재조달비용
손실 또는 손괴된 재물을 수리, 대체하는데 충분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일지역 혹은 기타 지역에서 동일 용도의 재물로 수리 또는 대체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실재로 지불한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감가상각은 하지 않습니다. 재조달비용은 신축건물이 재건을 필요로 할 때에는 건물의 기초공사비용을 포함합니다. 보험목적물은 배서나 신고란에 기재함으로써 기초부분을 확장하여 담보합니다. 피보험자가 손상재물을 수리나 대체하지 않으면 손해사고 일자의 시가로 보상됩니다. 보험금이 시가에 따라 지급되고,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일로 부터 12 개월 이내에 재물을 대체하도록 결정을 내린다면 회사는 보험의 제 조건에 따라 시가와 재조달가액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동산
보관되어 있거나 판매용도의 상품, 원료와 가공처리중인 물질 또는 완제품 포장과 선적을 위해 사용되는 부대물품도 포함됩니다.

박물관 및 문화재단을 위한 재물보험

담보범위

회사는 신고란에 기재된 보험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보험의 각 목적물이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는 달리 언급이 없으면 신고란이 구내에서 발생되어야 하며 손해 담보 원인에 의해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손실 또는 손괴로 야기되어 져야 합니다.

보험금액

회사가 1사고당 발생된 손실 또는 손괴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보상액은 신고란에 명기된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보험목적물

건물
건물은 하나의 구조물로서 이에 딸린 부속물이거나 구내의 1000피트 이내에 있다면 아래의 물품을 포함합니다.
1. 불완전한 추가물과 그 추가물의 구성요소
2. 영구적으로 고정된 정착물, 기계와 장비
3. 구조물을 유지 또는 보조키 위한 내외부 장비, 표지, 정착물과 개인적인 재물
4. 역사적으로나 미학적으로나 가치를 지닌 건출적이거나 영구적인 인테리어 장식용품
5. 영구적으로 고정된 진열대, 선반, 탱크, 새장

건물은 아래 사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 포장된 표면
2. 옹벽
3. 대지와 물
4. 수목, 잡목, 식물, 잔디 또는 분재류
5. 수집물
6. 최하층이나 지하 표면보다 낮은 기초물이나 지지물

건물은 대체비용방식으로 평가됩니다. 대체비용은 건축사 또는 설계사의 설계, 도면, 청사진, 사진, 명세서에 대한 비용과 검사 요금과 손괴된 건물의 건설 또는 수리 보수비까지 계산된 그들의 보수를 포함합니다. 건물에 대한 보험금액이 이들 비용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시 회사는 추가적으로 US$10,000.-을 지급합니다.

만일 건물의 손실 또는 손괴되었지만 건물이 유용할 경우, 회사는 손해사고 이전과 동일한 자재, 기술 그리고 건축양식과 세부 묘사를 사용하여 건물을 대체, 수리 또는 복원합니다. 그러나 건물의 대체, 수리 또는 복원에 필요한 자재와 기술이 부적절하다면, 회사는 손해사고 이전의 상태에 가장 유사하게 건물을 대체, 수리 또는 복원할 수 있는 자재와 기술을 사용합니다.
문화재 보호법이나 여타 구획화 규정과 같이 구획화의 토지사용 또는 건물신축과 관련된 유효한 법령 또는 법률이 손해사고 당시에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법령이나 법률이 손실 또는 손괴된 건물의 수리와 재건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리고 피보험자가,
1.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그 건물을 수리 또는 재건한다면 회사는 다음사항에대해 보상합니다.
 a. 건물의 손괴 및 미손괴 부분에 대한 대체가치
 b. 건물의 미손괴 부분을 파손하여 제거하는데 든 비용
 c. 법령이나 법률이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표준에 일치하도록 동일한 크기로 건물을 수리 또는 재건하는
 데 든 추가비용

2. 건물을 수리, 재건, 또는 대체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아래사항에 대해 보상합니다.
 a. 건물의 손괴 및 미 손괴부분에 대한 시가
 b. 건물의 미손괴 부분을 파손하여 제거하는데 든 비용

상기 1,2 번에서 회사는 공해물과 오염물을 피보험자나 타인이 실험, 검사, 청소, 제고, 억제, 화학처리, 해독처리, 중성화 시키거나 또는 공해나 오염의 정도를 평가토록 요구하는 법령이나 법률의 준수와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재물
피보험자의 박물관이나 문화재단의 재물과 개인적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여타 개인적인 재물입니다. 신고란에 기재된 구내나 구내의 1000 피트 이내에 있는 피보험자 건물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포함합니다.
1. 타인의 개인적인 재물에 대해 피보험자가 제공 또는 기획한 노동, 자재, 용역비
2. 피보험자가 소유하지 않는 구조물에 있는 건물과 유리를 개선, 개량시킨 부분.
3. 피보험자가 계약상의 책임으로 임대한 개인적인 재물
 단, 계약상의 책임으로 제공된 타인의 개인적인 재물 또는 고용인이나 독지가의 개인적인 재물이 해당되
 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재물은 다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 토지 또는 물
2. 성장하는 농작물
3. 수목, 잡목, 식물, 잔디 또는 분제류
4. 공공도로에서 사용 허가 받은 차량이나 기계
5. 자가 동력을 갖춘 선박
6. 항공기
7. 항공기나 항해 선박으로 부터 하역 이전이거나 적하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이 끝나기 이전인 수입적하물
8. 항공기나 항해선박에 선적되었거나 적하보험에서 담보되는 상태인 수출 적하물
9. 동물류, 포류, 어류 또는 곤충류
10. 수집물
11. a. 현금과 유가증권
 b. 조건부 판매나 신탁에 의해 피보험자가 판매한 개인적인 재물. 또는 고객에게 인수된 뒤의 분납금

또는 체납된 금액을 지닌 개인적인 재물.
회사는 아래의 법령이나 법률의 준수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입은 손실 또는 손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재물의 건축, 사용 또는 수리를 규정하는 법령이나 법률
2. 잔존물 제거비용을 포함하여 어떤 재물의 해체를 요구하는 법령이나 법률
보험의 여타 목적물로 부보된 개인적인 재물이 본 조항의 개인적인 재물로 역시 부보된다면 보험의 여타 목적물의 초과인 셈이다. 이 초과된 개인적인 재물보험은 본 개인적인 재물보험의 보상금액, 사고의 원인과 여타 제 조건을 근거로 합니다.
개인적인 재물은 면책 조항에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비용방식으로 평가됩니다.
개인적인 재물 평가시에는 다음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1. 손괴된 개인적인 재물로부터의 상표, 캡슐, 포장지 또는 용기 대체
2. 부보된 개인적인 재물의 확인과 수리

면책사항
1. 원상회복 불가능한 자산대장, 귀중 서류와 기록물, 사진필름, 슬라이드, 테이프와 프린터 그리고 포장이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아닐경우, 전자 정보처리 미디어는 공백 상태의 비용으로 가치평가됩니다. 만일 자료가 복사 되었졌다면, 그 복사 비용까지 추가로 평가됩니다.
2. 완성되어 배달을 기다리는 동산과 판매된 개인적인 재물은 피보험자의 판매가로 평가되나 할인가격이나 판매 관련 비용은 재외됩니다.
3. 타인의 개인적인 재물에 피보험자가 제공하거나 기획한 노동, 자재와 용역비는 실비용으로 평가 됩니다.
4. 수집물이 아닌 금, 금괴와 여타 귀금속은 손해사고일 이후 근무일수 기준으로 10 일 동안에 대한민국 귀금속 상가의 평균시장가격으로 평가된 금액 또는 피보험자가 대체키 위해 실제 지불한 합계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5. 임대된 개인적인 재물은 대체비용방식으로 평가되며 피보험자와 법적 책임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여타 구내에 있는 개인적인 재물
여타구내에 있는 개인적인 재물은 피보험자의 개인적인 재물이나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로써 신고란에 기재되지 않은 구내에 있다.

다음의 보험목적물에 대해 회사는 재물보험 신고란에 기재된 보험금액으로 보상할 것을 허용합니다. 이 보험금액의 적용은 추가보험료 없이 보험의 추가사항으로 승낙됩니다. 이것들은 피보험자의 구내에 있는 그것과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들 보험금액이 충분치 못하면,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전제로 구내에 있는 1 개 또는 더 많은 보험목적물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험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한 보험목적물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험금액을 설정할 때, 재물 및 이익상실금 신고란에 기재된 보험금액은 회사가 재물보험 신고란에서 허용한 보험금액을 포함한 총보험금액이 됩니다.

전자 정보처리 장비
전자정보처리 장비란 정보처리 시스템과 여타 전자시스템으로써 외래정보의 추적, 수집물의 분류, 조사자료나 회원의 관리와 정보 전달 용도로 사용된다. 전자정보처리 장비는 장비, 구성요소와 정보처리 기능 전용의 냉방기, 화재방호기구를 포함하여 관련 주변기구를 통틀어 말합니다.
그러나 전자 정보처리 장비가 전환장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전자 정보처리 장비는 대체비용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임대된 전자 정보처리 장비는 대체비용 방식으로 평가되나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전자 정보처리 미디어와 귀중서류

전자 정보처리 미디어는 외래정보의 추적, 수집물의 분류, 조사자료나 회원의 관리와 정보 조달용도로 쓰이는 펀치카드, 테이프, 디스크, 드럼, 셀, 여러 마그네틱 기록기, 또는 기억장치를 말합니다. 전자 정보처리 미디어는 또한 미디어에 기록된 정보와 데이타 프로그램 입력용 최초 원정보를 포함합니다.
귀중 서류란 귀중한 서류, 수집물 목록, 수집물 기록서, 사진필름, 슬라이드와 테이프를 가리킵니다.
귀중서류는 아래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 전자 정보처리 미디어
2. 달리 언급이 없으면 현금과 유가증권
3. 수집물

전자 정보처리 미디어와 귀중서류는 실제로 대체와 재생하는데 드는 총 비용으로 평가됩니다. 대체와 재상이 불가능 하다면 공백 상태의 가치로 평가됩니다.
회사는 또한 직접적인 물질적 손실 또는 손괴가 없었다면 피보험자가 입지 않았을 손해의 복원기간중에 지출한 추가 부대비용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회사는 이 추가 운영비로 신고란에 기재된 전자 정보처리 미디어와 귀중서류의 보험금액의 25%를 지불하게 되는데 $250,000.-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타비용

기타비용이란 피보험자의 재물이나 부속업무시설의 손실 및 손괴가 없었다면, 피보험자가 지출할 통상의 비용을 초과하여 업무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지불한 제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예정된 행사나 전시회의 변경 시설을 대중에게 홍보키 위해 발생된 기타 비용도 포함됩니다.
또한, 교육적 프로그램이나 조사활동과 같은 업무를 계속하기 위한 구내나 장비를 임차하는데 발생된 비용과 임차구내에서 업무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든 운송비와 보관비까지도 포함됩니다.
회사는 복원기간 동안에 발생한 추가비용을 지불합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지출한 추가비용 또한 지불합니다:

1. 공무원이 피보험자 구내로의 접금을 금지할 때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이러한 조치는 손해 담보 원인에 의해 피보험자 구내를 벗어난 재물이 직접적인 물질적 손실 또는 손괴의 결과이여야만 합니다. 회사의 보상은 시당국이 조치를 취한 시기로부터 30 일간으로 제한됩니다
2. 추가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면 재물을 수리 또는 대체하기 위해서나, 귀중서류, 기록장비, 미디어상의 손실된 정보를 조사, 대체, 복구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해 증가된 손해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재물을 재건, 수리 또는 대체하거나 업무의 재개를 지체시키는 데모자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한 구내에서의 간섭
 2) 허가, 임대 또는 계약의 중지, 경과, 취소

전화장비

전화장비는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신고란에 기재된 구내에서 서면 계약상 유지토록 되어있는 전화 시스템이다. 전화장비는 전자 정보처리 장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전화장비는 대체비용방식으로 평가됩니다. 임대된 전화장비는 대체비용방식으로 평가되나 피보험자의 법적책임 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개인적인 재물

타인의 개인재물이란 피보험자의 소유가 아닌 재물로써 신고란에 기재된 구내 또는 300 미터 이내에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개인재물입니다. 여기에는 종업원의 개인재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개인적인 재물은 피보험자의 재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되나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재물 보상한도가 이 보험목적물의 초과보험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업원 개인재물
종업원의 개인재물은 고용인 소유의 개인재물로서 신고란에 기재된 구내나 구내의 300 미터 이내에서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고 있는 개인재물입니다. 종업원의 개인재물은 피보험자의 개인재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한도액을 초과해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재물 보험금액은 이 보험금액의 초과보험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운송중인 개인적인 재물
운송중인 개인적인 재물은 운송중인 피보험자의 재물 또는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타인의 재물을 말합니다. 회사는 등기상의 우편배달물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보험자는 또한 "본선인도가격" 방식으로 팜배된 선적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을 보상합니다. 수취인에게 선적물 증서가 전달되었으나 수취인이 선적물의 손실이나 손괴를 이유로 대금지불을 거부한다면, 피보험자는 본보험에서 담보되는 손해라고 클레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1. 회사에게 선적물을 회수하도록 서면상의 동의를 제공하고
2. 회사에 피보험자의 권리를 위임하지 않으면 수취인으로부터 선적물의 회수를 시도할 수 없습니다.

상표와 꼬리표
상표와 꼬리표 담보는 손괴된 동상이 잔존가액을 가질지라도 피보험자의 상표와 꼬리표가 부착된 상태로 손괴된 동산을 판매하는 것을 원치않을 경우, 피보험자가 아래 2 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 상표와 꼬리표를 제거하고서 법률에 부합하도록 동산에 다시금 꼬리표를 붙임.
2. 손괴된 동산에 "잔존물"이라고 꼬리표를 붙인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손괴된 동산에 더 이상의 손괴
 를 발생시키지않음.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는 아래 2가지 경우의 차액을 지불합니다.
1. 상표와 꼬리표를 부착한 손괴 동산의 잔존가액
2. 상표와 꼬리표가 제거된 손괴 동산의 잔존가액

결과적 손해
결과적 손괴는 손괴되지 않은 일부분품도 완제품으로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손해 담보원인에 의해 피보험자 제품의 일부가 물질적으로 손실 또는 손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손괴되지 않은 개인적인 재물의 결과적 손해에 대히서도 보상합니다.

현금과 유가증권
현금과 유가증권 담보조항은 아래 어느 장소에 있어서 손실, 손괴, 또는 파손된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대체키 위하여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1. 구내상의 장소에서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신고사항의 기재된 구내
 b. 은행
 c. 안전한 보관소라고 인정된 장소
2. 구내를 벗어난 장소에서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a. 무장경호 차량회사의 관리하에 있을 때
 그러나 우편송부나 무장경호 차량회사가 아닌 임시고용된 운반인이 점유하에 있을 경우는 제외됩니다.

현금
1. 화폐, 동전, 은행권, 금은괴
2. 대중에게 판매키 위한 여행자수표, 등록 수표, 현금을 의미합니다.

유가증권
1. 피보험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여타 재물을 대표할 수 있는 모든 증서와 인증서
2. 피보험자가 저당이나 대부의 담보로서 지니고 있는 타인의 재물
유가증권이 손실, 손괴, 또는 파괴되었을 시 회사는 그 현금을 대체할 비용을 보상합니다.
유가증권이 손실, 손괴 또는 파손되었을 시 회사는 손해사고 발견 이전의 업무 종료일의 마지막 시점에서 현금가액으로 평가된 유가증권 가치나 그 유가증권을 대체하는 실질비용 중 낮은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회사는 담보되는 손해의 결과로서 발생된 소득, 이익, 이익 배당금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저당 또는 대부의 담보로서 지니고 있는 타인의 재물에 손실, 손괴 파손이 발생될 시,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아래 부분을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의 대부시점에서 재물의 가치
2. 피보험자가 대부금액과 담보물을 회사로 양도할 경우,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니면서 손해사고시 미지불로
 남아있는 대부금액과 법적 이자율로 계산된 대부금액의 이자를 추가로 보상합니다.
개인재물 보험금액이 이 보험금액의 초과보험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미수금
미수금은 손해 담보원인에 의한 미수금의 자산대장의 직접적인 물질적 손실 또는 손괴로 말미암아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전자 정보처리 미디어의 손상으로 인해 회수 불가능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미수금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됩니다:
1. 피보험자의 운용 현금감소 보완을 위해 피보험자가 확보한 대부금에 대한 이자
2. 손해로 야기된 추가적인 회수비용
3. 피보험자의 미수금 장부기록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회사는 직접적인 물질적 손실 또는 손괴가 없었다면 피보험자가 입지 않았을 손해사고의 복원기간중에 발생된 부대관리비용을 보상합니다. 회사가 부대관리비용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은 신고란에 기재된 보험금액의 25%이며 $250,000 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미수금의 손해액에 대한 지급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담보되는 손해사고 발생의 증거는 있으나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시 미수금의 예상금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을 때,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최근 원별장부가에 기초하며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사고발생 전년도의 동일 회계월(月)도 종료일에 미수금의 합계액을 구합니다.
 b. a.단계 기간 이전의 12 개월에 대비하여 손해 발생직전의 12 개월간 피보험자의 상품과 용역의 총매출
 액의 인상 또는 인하비율을 계산합니다.
 c. 손해발생 회계월의 종료일자의 전체 미수금액은 a.단계에서 결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b.단계에서 계산
 된 비율에 의해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입니다.
 d. 정해진 월별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손해발생 회계월(月)도의 미수금의 통상적인 변동에 따라 조정됩
 니다.
2. 회사는 확정된 전체 미수금에서 아래 금액을 공제합니다:
 a. 기록에 의해 손실 또는 손괴되지 않은 미수금액;

b. 피보험자가 확정 또는 회수할 수 있는 여타 금액;
c. 피보험자가 회수 불가능하다고 악성부채로 잡은 금액;

3.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 후에 미수금을 회수한다면, 피보험자는 지급받은 보험금액 한도까지 회사로 회수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급 보험금을 초과해서 회수한 금액은 피보험자가 차지합니다.

미술품

미술품 담보란 신고란에 기재된 구내와 구내의 1000 피트 이내에 있는 피보험자의 미술품과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고 있는 타인소유의 미술품을 가리킵니다. 미술품은 희귀한, 예술적인, 과학적인, 역사적인 중요성과 가치를 지닌 물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수집물의 실제 전시용으로 쓰인 틀, 새도박스, 그리고 유리도 포합합니다.
그림, 에칭, 드로잉, 테피스트리, 조각품, 고미술품, 희귀도서와 원고, 고대 물품, 역사적 위인의 유품과 보존된 자연물의 표본이 포합됩니다. 그러나 수집물에는 아래 물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현재 통용되는 현금, 화폐, 동전, 우표
2. 채무의 장부, 영수증, 증서, 증거물
3. 개인적인 재물
4. 건물
5. 귀중서류
6. 살아있는 동물, 조류, 어류 또는 곤충류
7. 수목, 잡목, 식물, 잔디, 또는 분제류
8. 살아잇는 천연 자연물의 표본

수집물은 아래 방식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1. 손실 또는 손괴로 인한 가치하락 분을 포함해 손실 또는 손괴된 수집물을 복원 또는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 손해사고 발생일자의 손실 또는 손괴된 수집물의 유통시장 평가액
3. 손실 또는 손괴 이전에 피보험자와 소유주가 합의한 금액
4. 피보험자의 법적 배상책임금액
5. 적용 가능한 보험금액

손괴된 품목이 한 조(組)나 세트를 구성하는 부분품일 경우, 피보험자는 아래의 보험금 산출 방식중 1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보상합니다:

1. 전체 조나 세트의 시장가치. 피보험자는 그 나머지 부분품을 회사에 반납합니다;
2. 회사가 손괴된 부분품을 수선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피보험자는 손괴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품을 그대로 소유합니다. 수리된 품목과 한 조나 세트를 이룬 품목이 손해사고 이전 보다 평가절하되었다면, 회사는 사고발생전과 후의 나머지 품목의 가격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는 손해사고 발생 이전의 가액이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손실 또는 손괴된 일부 부분품이 구할수 없는 것이거나 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사고 이전의 손실 또는 손괴 부분품의 시장가치 피보험자는 손괴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품을 그대로 소유합니다. 만일 나머지 부분품의 가치가 하락되었다면, 회사는 손해사고 발생 이전과 이후의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는 그 조나 세트에 대해 손해발생 이전의 가액이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잔존물 제거

잔존물 제거 담보는 보험기간 중 보상하는 원인으로부터 야기된 신고란에 기재된 구내로 부터 담보되는 재물의 잔존물을 제거하는 데 소요된 비용의 담보를 의미합니다.
회사에 아래일자 중 빠른 날짜로 부터 180 일 이내에 통보되었을 때 그 비용을 지급합니다:

1. 직접적인 물질적 손실 또는 손괴;
2. 보험기간 종료일

잔존물 제거담보는 다음의 비용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1. 토지 또는 물로부터 공해물과 오염물을 추출하는 비용;
2. 오염된 토지와 물을 제거, 복원, 대체하는 비용
잔존물 제거의 최대 지급액은
1. 전자 데이타 처리 장비, 전자 정보처리 미디어와 귀중서류와 전화장비의 경우 잔존물 제거에 대한 총비용을 지급합니다;
2. 여타 보험목적물의 경우에는
 a. 손실 또는 손괴에 대한 공제금액과 보험금액의 25%를 보상합니다; 단,
 b. 손괴된 재물에 대해 신고란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이 a.항목의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면,
 c. a.항목에 언급된 금액은 잔존물 제거비용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회사는 상기 2 의 금액을 초과하여 신고란에 기재된 잔존물 제거 비용에 대한 보험금액까지 지급합니다.

수목, 잡목, 식물, 잔디 또는 분제류
수목, 잡목, 식물, 잔디 또는 분제류 담보란 아래에 명기된 사유로 손실 또는 손괴된 피보험자 소유의 상기 항목을 말합니다;
1. 화재;
2. 벼락;
3. 폭발;
4. 폭동 또는 민중봉기;
5. 항공기, 또는 자가 동력을 갖춘 미사일
6. 붕괴
7. 조류, 곤충류, 설치류를 제외한 동물
8. 예술품 파괴
9. 차량
수목, 잡목, 식물, 잔디 또는 분제류는 대체비용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소방용역비
소방용역비란 화재 소방서가 손해 담보 원인으로부터 담보 재물을 구조 또는 보호할 경우 아래의 금액을 말합니다:
1. 손해사고 이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한 요금;
2. 지방 법령에 의거해 피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요금;
이 보험목적물은 개인재물 보험의 초과보험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재고조사 및 평가
재고조사 및 평가는 부보된 재물의 손실 또는 손괴시 회사가 요구한 재고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 보험목적물은 보험목적물의 개인재물 보험의 초과보험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구외보관재물
피보험자 구외 보관 재물이란 신고란에 기재되지 않은 구내에서 일시적으로 놓여있는 피보험자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오염물 정제 및 제거
재물에 대한 보상하는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오염물을 해제, 방출, 또는 제거할 때, 신고란에 기재된 구내에서 토양이나 물로부터 오염물을 분리해 내는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회사는 아래일자 가운데 빠른 날짜로 부터 180 일 이내에 회사로 통보될 경우에만 그 비용을 보상합니다:
1. 직접적인 물질적 손실 및 손괴 일자;

2. 보험기간 만료일.
각 구내에 대해 회사가 지급하는 최대금액은 신고란의 오염물 정제 및 제거 부분에 기재된 보험금액입니다. 즉, 적용되는 신고란 또는 적용되는 갱신계약에 나타난 각 보험기간 동안에 발생된 손해 담보원인으로부터 야기된 상기와 같은 비용의 총 합계액입니다.

추가담보사항

회사는 또한 아래사항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1. 소방장비 : 소방장비가 분사되었을 시, 이를 다시 채우는 비용

2. 이동
피보험자가 담보되는 원인에 의한 손실 또는 손괴로 부터 목적물을 보존하고자 신고란에 기재된 구내로 부터 목적물을 이동하는 경우, 이동중이거나 다른 장소에 일시 보관하는 동안에 보험의 목적물이 입은 직접적인 물질적 손실 및 손괴.

3. 승강기 충돌
아래 사유로 발생된 손실 및 손괴
a. 타물체 와의 충돌로 입은 승강기 손괴
b. 승강기와의 충돌로 피보험자의 개인적인 재물이나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타인의 개인적인
재물이 입은 손괴.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은 신고란의 개인재물 부분에 설정된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회사는 아래사유로 인한 손실과 손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a. 전쟁과 군사행위;
b. 정부 조치;
c. 핵위험.

4. 건물에 대한 강도 손괴
a. 피보험자 소유의 건물
b. 피보험자 소유가 아니지만 점유하고 있어 책임이 있는 건물
에 대한 강도행위 및 기도로 야기된 손해 담보 원인에 의한 손실 및 손괴로서 또 다른 담보되는 손해로 인한 속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공제금액

회사가 지급하는 최대 보험금액은신고란의 개인적인 재물에 명기된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신고란에 기재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지급함지다. 공제금액은 매 사고당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질권설정

회사는 건물의 손실 및 손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신고란에 기재된 질권설정이 있으면 질권설정자에게 공동으로 보상합니다. 그러나 아래 사유에도 불구하고 질권설정자는 보험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본 증권의 요구사항에 불응할 경우;
2. 건물의 질권설정자가 질권설정 해제 또는 그와 유사한 조치를 내리는 경우.

피보험자가 본 증권의 요구사항에 불응해서 회사가 질권설정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피보험자는 회사가 질권설정자에게 지불한 금액만큼 회사로 지불해야 합니다.

질권설정자는 피보험자로부터 질권 채무의 차액만큼 받을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질권설정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질권을 인수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렇게되면, 피보험자는 잔여 질권 채무를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회사는 보험료 납부를 질권설정자에게 요청합니다.

질권설정자는 질권설정에 대한 변동이 있을 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가 본 보험계약을 해지 한다면, 회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이 질권설정자에게 서면 통보합니다.

1. 피보험자의 보험료 미납의 경우, 해지일자 20 일 이전에;
2. 다른 사유로 보험해지시 해지일자 60 일 이전에.

박물관 및 문화재단을 위한 이익상실 보험

담보범위

회사는 면책조항이나 보상한도조항에 명기된 사항을 제외하고서 보험목적물에 직접적으로 입은 물적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한도

회사의 모피, 보석, 시계, 귀금속 또는 비금속의 절도 및 약탈로 인한 손실 또는 손괴에 대한 보상은 한 사고당 US$10,000 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면책조항

본 보험은 아래사항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전쟁 및 군사행위
1. 선전포고를 하지 않거나 내란을 포함한 전쟁;
2. 정부, 주권국가, 또는 기타 공권력이 군인이나 대리인을 동원하여 실전을 벌이거나 공격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저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포함한 군사력을 이용한 전쟁행위;
3. 폭동, 반란, 혁명, 군사적 찬탈, 또는 정부기관이 이러한 행위를 저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취해진 행위
4. 상기와 같은 원인이 없었다면 담보가 될 수 있는 사고가 상기와 동시에 발생하거나 후속해서 발생했을 경우, 원인을 불문하고 전쟁이나 군사행위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입은 손실과 손괴.

정부행위
1.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한 재물의 몰수 및 파괴, 또는
2. 상기와 같은 원인이 없었다면 담보가 될 수 있는 사고가 사어기와 동시에 발생하거나 후속해서 발생했을 경우, 원인을 불문하고 정부행위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입은 손실과 손괴.

그러나,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 화재발생시, 화재확대를 방지하고자 정부가 취한 파괴행위에는 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위험
1. 핵반응 또는 방사능, 방사능 위험
2. 상기가 없었다면 담보될 수 있는 사고가 상기와 동시에 발생하거나 후속해서 발생했을 경우, 원인을 불문하고 핵위험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야기된 손실과 손괴.

그러나, 이 면책은 화재로 인한 결과적 손실과 손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의 또는 결정
개인, 조직, 단체 및 정부기구의 결정(의사결정의 실패도 포함).

그러나,이 면책은 담보되는 위험으로 인한 결과적 손실과 손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획, 디자인, 원료 또는 유지관리
다음의 하자있는, 부적절한, 결함있는 계획, 디자인, 원료 또는 유지관리;
1. 계획, 구획, 조사, 배치
2. 디자인, 명세서, 세공, 수리, 모델변경, 변화, 소형화
3. 수리, 건설 또는 모델변경에 사용된 원료; 또는,
4. 신고란에 기재된 구내, 구외 소재의 전부 또는 일부 재물의 유지관리.

그러나, 이 면책은 담보되는 위험으로 인한 결과적 손실과 손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기만, 부정, 범죄행위, 또는 태만

그러나,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악의적인 파괴행위;
2. 고용된 운송인 또는 고용된 운송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일으킨 행위; 혹은
3. 명기된 담보 위험에 의한 속발 손실 또는 손괴

마모
마모, 점진적인 악화

그러나, 본 면책조항은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명기된 사고 원인에 의한 손실 또는 손괴와
2. 현금과 유가증권

실수
1. 시스템 프로그램상의 실수
2. 작업, 변경, 수리중에 있는 피보험자의 개인 재물, 타인의 개인 재물, 고용인의 개인 재물에 손괴를 가져온 실수로서 손해발생이 상기 작업에 기인한 경우.

그러나,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명기된 사고 원인에 의한 손실 또는 손괴
2. 현금, 유가증권, 원상회복 불가능한 자산, 귀중서류

자연적/점진적 악화
1) 녹 또는 산화, 변색, 고유의 하자, 부식, 부패, 곰팡이, 흰곰팡이, 균류
2) 본 보험에서 담보되는 사건의 직접적인 결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건조, 습도, 빛 또는 극한의 온도에 대한 노출

벌레 혹은 해충
벌레 혹은 해충

그러나,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명기된 사고 원인에 의한 손실 또는 손괴
2. 현금, 유가증권, 원상회복 불가능한 자산

3. 전자 정보처리 장비 또는 전자 정보처리 미디어와 귀중서류
4. 전화장비.

지진
1. 지진 혹은
2. 상기 1이 없었다면 담보될 수 있는 다른 원인이나 사고가 상기 1과 동시에는 순차적으로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지진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괴

그러나,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명기된 사고 원인에 의한 손실 또는 손괴
2. 운송중인 현금과 유가증권, 원상회복 불가능한 자산, 귀중서류, 개인적인 재물
3. 전자 정보처리 장비, 전자 정보처리 미디어 혹은 전화장비.

홍수
1. 풍력에 관계없이 호수, 저수지, 강, 개울, 기타 물줄기의 수면상승, 범람, 또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파동, 조수, 또는 파도; 혹은,
2. 상기 1이 없었다면 담보될 수 있는 사고가 상기 1과 동시에 발생하거나 순차적으로 발생했을 경우를 포함하여 원인이나 사건을 불문하고 지진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야기된 손실과 손괴.

그러나,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명기된 사고 원인에 의한 손실 또는 손괴
2. 운송중인 현금과 유가증권, 원상회복 불가능한 자산, 귀중서류, 개인적인 재물
3. 전자 정보처리 장비, 전자 정보처리 미디어 혹은 전화장비.

공해물 또는 오염물질
공해물질과 오염물질의 방출, 유출, 살포, 혼합,
명기된 사고원인에 의해 본질적으로 그러한 방출, 유출, 살포, 혼합이 발발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명기된 사고 원인에 의한 손실 또는 손괴
2. 운송중인 현금과 유가증권, 원상회복 불가능한 자산, 귀중서류, 개인적인 재물
3. 전자 정보처리 장비, 전자 정보처리 미디어 혹은 전화장비.

침하
포장도로, 공사 기초, 벽, 마루, 천장, 수영장의 침하, 갈라짐, 수축, 확장.

그러나,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명기된 사고 원인에 의한 손실 또는 손괴
2. 운송중인 현금과 유가증권, 원상회복 불가능한 자산, 귀중서류, 개인적인 재물
3. 전자 정보처리 장비, 전자 정보처리 미디어 혹은 전화장비.

분실
분실된 재물로서 재고조사시 발견된 재고 부족이 유일한 손실의 증거이거나 재물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는 물리적 증거가 없는 경우.

그러나,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명기된 사고 원인에 의한 손실 또는 손괴

2. 운송중인 현금과 유가증권, 원상회복 불가능한 자산, 귀중서류, 개인적인 재물
3. 전자 정보처리 장비, 전자 정보처리 미디어 혹은 전화장비.

지체나 시장상실
지체, 시장살실, 사용손실, 혹은 간접적이고 결과적인 모든 손해.

그러나,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명기된 사고 원인에 의한 손실 또는 손괴
2. 운송중인 현금과 유가증권, 원상회복 불가능한 자산, 귀중서류, 개인적인 재물
3. 전자 정보처리 장비, 전자 정보처리 미디어 혹은 전화장비.

전기적사고
재물에 발생된 전기적 사고

그러나,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여타 부보된 재물의 손실 또는 손괴
2. 명기된 사고 원인에 의한 손실 또는 손괴
3. 운송중인 현금과 유가증권, 원상회복 불가능한 자산, 귀중서류, 개인적인 재물
4. 전자 정보처리 장비, 전자 정보처리 미디어 혹은 전화장비.

기계적 사고
재물의 기계적 파손.

그러나,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여타 부보된 재물의 손실 또는 손괴
2. 명기된 사고 원인에 의한 손실 또는 손괴
3. 운송중인 현금과 유가증권, 원상회복 불가능한 자산, 귀중서류, 개인적인 재물
4. 전자 정보처리 장비, 전자 정보처리 미디어 혹은 전화장비.

증기보일러
1. 아래의 재물에 발생된 손실 또는 손괴:
 피보험자가 소유, 운영, 임차한 증기보일러, 증기 파이프, 증기터빈, 증기엔진 혹은 그 내부에서의 사고; 혹은,
2. 결과적인 이익상실 또는 기타 비용

추가면책조항

아래의 추가 면책 조항은 현금과 유가증권에만 해당됩니다;

양도
교환 또는 구매를 위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이양 또는 양도.

위조
위조

화재

저당물이나 담보물로 피보험자가 보관중인 타인의 개인재물에 대한 화재 손실 및 손괴.

경리
회계, 수리, 기록보관상의 실수에 기인한 손해.

문서와 기록서
원서, 기록서, 회계장부, 마이크로필름 또는 테이프에 대한 범죄로 인한 손실 또는 손괴.

아래의 추가 면책 사항은 미수금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부기
부기, 회계, 또는 영수증상의 실수와 누락.

감사
단지 감사 또는 재고 조사시 발견된 손해.
만일 손해가 다른 방법으로 발견된 경우, 피보험자는 그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감사나 재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의조항

절도
법적 소유주에게서 개인 재물을 빼앗을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훔쳐 도망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운송중 강탈
운송중인 차량을 정지시키고 강탈하는 행위

명기된 사고원인
1. 항공기 또는 자가 도역을 갖춘 미사일
2. 폭발
3. 화재 또는 벼락
4. 화재 보호장비로 부터의 유출
5. 지반 침하
6. 폭동 또는 민간붕기
7. 지방붕괴
8. 연기
9. 예술품 파괴행위
10. 차량
11. 화산폭발
12. 태풍이나 우박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아래의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제공을 하지 아니합니다.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시간 조항

기초공제 사항의 적용상 지진, 태풍, 홍수, 폭풍, 수해, 침하 또는 붕괴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실, 파괴 또는 피해가 연속적으로 ()시간 동안 일어나는 경우, 손실, 파괴 또는 피해가 동일한 지진학 또는 기상학상의 조건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보장하는 위험이 그 정도와 범위에 있어서 연속적이든 산발적이든, 단일 사고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각 사고는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 파괴 또는 피해가 처음 발생한 시점에 시작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고개시일자는 보험기간 중에 있어야 합니다.

서기 2000 년 문제 보장제외 조항

A.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B.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C. 회사는 상기 A 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D. 상기 A, B, C 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이버위험 보장제외 조항

전체 또는 일부를 구성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어떠한 종류의 손해도 제외됩니다.

a) 인터넷이나 유사한 시설의 사용 및 오용
b) 데이터 또는 기타정보의 전자적인 전송
c) 어떠한 컴퓨터 바이러스 혹은 비슷한 문제점

d) 어떠한 인터넷 주소(: 웹사이트 혹은 비슷한 시설)의 사용 혹은 남용
e) 웹사이트 혹은 비슷한 시설에 게시된 어떠한 데이터 혹은 다른 정보
f) 지진, 화재, 홍수, 태풍에 의한 손실 또는 손해가 아닌,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등에 발생한 어떠한 데이터의 손실 혹은 컴퓨터 시스템의 손상
g) 지진, 화재, 홍수, 태풍에 의한 오작동이 아닌, 인터넷이나 비슷한 시설 및 어떠한 인터넷 주소, 웹사이트 또는 비슷한 시설의 작동 혹은 오작동
h) 고의여부를 떠나 상표권 및 저작권, 특허권 등을 포함하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위반 행위

정보기술조항

본 조항에 따른 재물손해는 재물의 물리적 손상을 의미한다

재물의 물리적 손상은 데이터 삭제, 손상 또는 원래 구조의 변형으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의 해로운 변화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의 사항은 본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

A.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손해, 특히 데이터 삭제, 손상 또는 원래 구조의 변형으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의 해로운 변화 그리고 그러한 손해에서 기인한 기업휴지 손해. 이러한 제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손해의 결과인 데이터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손해는 담보됩니다.

B. 기능, 가용성에 장애,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 또는 접근성의 범위에서 기인한 물리적 손해, 그리고 그러한 손해에서 기인한 모든 기업휴지손해

전송 및 배포 보장제외 조항

150m (또는 500 피트) 이내의 피보험자의 재산 또는 고가 전송 및 배포 라인과 지지구조물에 대한 손실은 제외됩니다.

공공 시설의 확장 담보 또는 공급 업체 확장 담보 혹은 위임 업무 중단의 보장 등에서 송신기와 배포기의 일부가 아닌 제외조항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박물관종합보험의 구외전력조항은 본 면책 조항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위권 포기 조항

회사는 아래에 관한 어떠한 권리와 구제의 대위권에 대한 자격을 포기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A. 피보험자 또는 본 계약의 공동 소유자에 의해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사, 임원,

직원 또는 공무원 포함);

B. 계약에서 설명된 모든 피보험자(이사, 임원, 직원 또는 관리인, 하도급업자, 담보중개사 및 직원 포함)

()로 기인한 손해 보장제외

원 증권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명기된 위험, 목적물(재물)/소재지, 조항, 또는 배서, 섹션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원 증권 및 다른 보험조건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이 조항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원 증권의 내용에 따릅니다.

파괴 및 테러행위 보장제외

본 조항은 모든 보장부분에 적용됩니다.

테러행위 면책

실제 또는 예상되는 테러행위의 방어조치를 포함하여 테러행위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기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손실 또는 손해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기여하는 다른 원인에 상관없이 면책합니다.

테러행위는 개인, 조직, 재물에 대한 아래와 같은 성질을 의미합니다.

1. 하기 사항 및 하기 사항에 대한 준비 포함:

a. 강제성 폭력성 사용
b. 위험한 행동의 협박 행위
c.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기계 시스템을 간섭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2. 하기 1개 또는 2개 사항일때 적용

a. 협박이나 정부, 민간인 또는 구성요소를 강요하거나, 경제적인 모든 요소를 방해하는 효과
b. 정부를 협박 또는 강요하거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이념이나 경제적 목적의 의도 또는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또는 반대를 표현) 의도

손해규모에 관계없이 위 항목 1, 2 뿐만 아니라, 이 테러 면책조항은 아래의 테러사건에도 적용합니다.

1. 방사능물질 유출, 직간접적인 방사능 오염

2. 생물학적, 화학적 물질을 살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거나

3. 테러를 목적으로 하는 생물학적, 병원균의 살포 포함

상기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조항은 우연한 대인 신체손상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쟁, 내전, 정치적 위험 및 테러행위 보장제외 조항

이 조항은 전쟁, 침략, 외국 원수에 대한 행위, 적대 행위(전쟁선포 유무와 무관), 내전, 반란, 시민소동, 군사소동, 봉기, 반항, 혁명, 강탈, 계엄령, 몰수, 이와 관련된 모든 통제, 억압행위의 결과로 일어나는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손실이나 손해 비용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테러행위는 정치, 종교, 이념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재보험사가 이 조항에 의해 어떠한 손해도 보상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반대 입증책임의 부담은 원보험사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조항의 일부가 무효 또는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나머지 규정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준거법 및 관할권

이 증권은 대한민국의 법, 관행, 관할권을 따릅니다.

이 증권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대한민국 내의 해당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과 그러한 해당 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건에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전술 조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와 회사는 피보험자의 재산이 있는 곳, 또는 피보험자의 활동지, 그리고 분쟁의 내용이 그러한 재산이나 활동에 관련되는 국가나 관할 지역의 법이 필요하는 경우에는 이 증권에 관한 모든 분쟁이 해당된 지역의 현지 법에 따를 것임을 양해하고 동의합니다. 각 당사자는 그러한 지역 내의 해당 법원의 관할권을 따를 것과 그러 한 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건에 따를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 증권 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법과 그러한 법원의 관행에 따라 결정합니다.

누출, 오염 및 오탁 보장제외

1. 이 증권 그리고/또는 이 조항이 첨부될 문서에 담긴 그 반대 내용의 여하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증권하에서 회사는,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하한 조항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이든, 모든 종류/명칭의 누출 그리고/또한 오염 그리고/또한 오탁에 관한 손실, 비용 또는 피해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재 그리고/또는 폭발이 이 증권에 제외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화재 그리고/ 또는 폭발이

누출 그리고/또는 오염 그리고/또는 오탁으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야기되는 경우, 그러한 화재 그리고/또는 폭발에서 야기되는 이 증권 하에 부보된 모든 손실이나 피해는 이 증권의 조건과 제한사항에 입각하여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2. 이 증권의 여하한 조항이라도 그것이 잔존물 제거 그리고/또는 청소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언급하는 것이 있는 한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당사자들은 양해하고 동의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구내로부터 파손되거나 파괴된 피보험 재산의 잔존물 제거에 합당하게 소요된 비용 그리고/또는

나. 직접적, 외형적 손실이나 피해의 결과로 필요해진 피보험자의 구내에서의 청소작업의 비용.여기서 오염 제거 또는 그러한 구내의 물, 흙 또는 기타의 물질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위의 가.항과 나.항 모두에 관련하여 합계 금액이 최고 미화 2천만 달러 또는 손해액의 ()%를 초과하지 않음.

여기서 오염 제거 또는 그러한 구내의 물, 흙 또는 기타의 물질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는 것으로 당사자들은 양해하고 동의합니다.

보험 보상의 선결 조건으로서 공제금액의 적용에 의해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부보재산에 발생된 직접적 재물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동의하였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어느 표현도, 보험 보상의 연장에 관한 그러한 사항이 이 증권의 어느 다른 곳에서도 인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잔존물 제거 그리고/또는 청소 비용에 대한 보험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됩니다.

3. 위의 1.항과 2.항의 내용 가운데 어느 것도 이 증권 그리고/또는 첨부물의 방사능 오염 관련 예외조항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전기적 사고 보장제외 조항 삭제

본 증권에 기재된 전기적 사고 보장제외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적 사고로 재물에 발생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기계적 사고 보장제외 조항 삭제

본 증권에 기재된 기계적 사고 보장제외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계적 사고로 재물에 발생된 손해를 보장합니다.

테러행위 보장제외 조항 (NMA2921)

보통약관 또는 배서 조항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성격, 또는 기타 원인에 관계없이 테러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 손해, 비용을 보장 제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배서조항의 테러행위란 무력이나 폭력 및 다른 사람 또는 그룹들로부터의 위협의 사용에 국한되지 않고 홀로 정치, 종교, 이념 또는 대중에게 위협을 가하고 정부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지닌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어떠한 조직이나 정부에 연관되어 행동하는 모든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어, 예방, 억제 또는 어떠한 테러행위와 관련하여서도 초래된 어떠한 자연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한 분실, 손상, 비용 또는 경비는 제외됩니다.

만일 재보험사가 이 면책조항을 근거로 어떠한 손실, 손해, 비용 또는 경비가 이 보험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반대 입증책임의 부담은 원보험사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배서조항의 일부가 무효 또는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나머지 규정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방사능 오염, 화학, 생물학, 생물화학, 전자자기무기, 사이버공격 보장제외

이 조항은 어떠한 조항 보다 선행 합니다.

1. 다음의 내용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1 어떤 핵 연료나 핵 폐기물 또는 핵 연료의 연소에서 발생되는 방사능에 의한 오염 또는 방사선

1-2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핵 설치, 원자로 또는 기타 핵 조립 또는 핵 구성 요소의, 독성, 폭발성 방사능 또는 기타 유해하거나 오염된 물질

1-3 모든 무기 또는 장치 또는 원자 핵분열 및 / 또는 융합 또는 기타 같은 반응 또는 방사능 무력이나 물질

1-4 어떤 방사성 물질, 유독성, 폭발성 방사능 또는 기타 유해하거나 오염 물질. 이 하위 조항의 배제는, 그런 방사성 동위원소가 준비되거나 운반, 보관, 또는 저장 및 농업, 과학 상업적 또는 기타 유사한 평화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 핵 연료 이외에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범위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1-5 어떤 화학, 생물학, 생물 화학, 또는 전자기 무기

사이버공격 보장제외 조항

1.1 아래의 제 1.2 조에 의거하여 이 보험은 어떠한 경우에도 컴퓨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악성 코드,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프로세스 또는 기타 전자 시스템 또는 작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했거나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 손해 또는 비용을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2 이 조항이 전쟁, 내전, 혁명, 반란, 폭동, 또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내전의 위험을 다루는 정책 또는 교전 권력 또는 테러 또는 정치적 동기로 행동하는 사람에 의한 또는 적대 행위에 대한 정책에 대해 보증되는 경우,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기타 전자 시스템의 발사 및 / 또는 유도 시스템 및 / 또는 모든 무기의 발사 메커니즘에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다른 방법으로 다룰 것)을 배제하기 위해 작동해서는 안됩니다.

사고협조조항

이 증권상의 상충되는 부분에 상관없이, 이 조건은 모든 보상책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a) 원수보험자는 보상 가능한 클레임을 야기할 수 있는 사고 발생을 인지하였을 경우 14 일 이내에 재보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b) 원수보험자는 재보험자에게 사고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손해사정인, 조사자 또는 기타 전문가들의 선정과 클레임의 협의, 조정 및 확정시에 재보험자와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서 지정된 손해사정인, 조사자 또는 기타 전문가들은 원수보험자와 재보험자를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보수, 비용, 경비 및 기타 지불금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간에 비례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기존의 손상 보장제외 조항

이 조항에 의해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존재했거나 개시일 이전에 발견된 재물의 손상 및/또는 결함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충분한 포장 보장제외 조항

이 조항에 의해 보험에 가입된 목적물의 포장 또는 준비가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하여 발생하는 손실 및/또는 손해 또는 비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손해 보장제외 조항

이 조항에 의해 보험에 가입된 목적물의 운송과정 중 차량 방치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서 차량 방치란 작품을 운송하고 있는 차량에 아무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술품 운송전문가 보증 조항

이 조항에 의해 보험에 가입된 목적물은 예술품 운송 전문가에 의해 포장되고 취급되며, 그러한 운송과 관련된 정상적인 위험을 견디도록 확보되어야 합니다.

오기 및 누락

이 약관에 따른 보장범위는 고의나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아래의 사항에 의해 침해받지 않습니다.

1.1 오기 또는 누락
1.2 부정확한 묘사
1.3 요구된 대로 보고되지 않음
1.4 피보험자의 직책 또는 명칭의 오기

피보험자는 이러한 오류가 피보험자에 의해 발견된 이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오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보험료조정 특별약관

1. 잠정금액조항
이 약관에 규정되는 보험가입금액은 잠정금액으로 하며 잠정예치보험료도 이를 기초로 산출합니다. 이는 명시된 보험목적의 보상한도와 증권에 기재된 타보험에 관한 규정에 의해 총보험가액을 부보하려는 목적때문입니다. 이 증권상에 기재된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통지되는 총보험가액을 기초로 보험료가 조정될지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책임지거나 타 보험에 의하여 보상됩니다.

2. 예치보험료조항
예치보험료는 수록된 각 소재지의 보상한도액과 각 소재지별로 별도 요율에 의하여 계산된 연보험료 총액의 ()%로 합니다. 예치보험료는 책임개시일에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잠정보험가액 × 연요율 × 예치율 ()% = 예치보험료

3. 가액통지조항
피보험자는 매월 말일로부터 ()일 이내에 이 약관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목적물의 정확한 소재지와 각 소재지별 목적물의 총보험가액 및 매월말 현재로 유효한 소재지별 보험계약 내용을 당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만약 보험계약자가 상기의 요건과 같이 당회사에 보험가액을 통지하지 않았을 때는, 이 증권상의 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지에 대해서만 손해발생전의 최종보험가액통지에 포함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합니다.

4. 전액통지조항
이 증권하에서 보상책임은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발생전에 최종통지된 손해발생지에서의 보험가액(타보험이 있을 경우 그 보험금액을 공제함)이 보험가액통지 작성일자 현재의 그 소재지의 실제가액(타보험이 있을 경우 그 보험금액 공제함)에 대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최종 통지서를 접수한 후에 획득한 소재지에서 일어나는 손해에 대한 책임(가액통지 조항에 규정한 것은 제외)도 같은 방법으로 분담하되, 다만 통지서 작성일자 현재의 전소재지의 통지된 가액(타보험이 있을 경우 그 보험금액을 공제함)이 실제가액(타보험이 있을 경우 그 보험금액을 공제함)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5. 보험료 조정조항

이 증권에 기재된 보험료는 잠정보험료입니다. 이 약관에서 담보되는 보상책임하에 대한 실제보험료는 이 증권의 보험기간 만료일에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월평균 재고가액 × 연요율 = 실제보험료

타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가입금액을 공제한 후 (그러나 통지된 가액을 초과하지 않음) 각 소재지별 총잔존가액의 평균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출한 평균보험가액의 보험료가 잠정보험료를 초과하면 보험계약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회사에 지불하여야 하며 잠정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그 초과 지불된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이 증권의 자동 복원을 위하여 보험금 지급액에 적용할 보험료는 본 증권의 보험기간내에 납입되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손해 발생일로부터 보험만기일까지 보험금 지급액에 대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회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고 추가 경과보험료로서 징구할 수도 있습니다.

본 증권의 또 한가지 조건으로 이에 저촉되는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상에 규정된 조정보험료는 어떤 경우에도 부보된 재고품에 적용되는 이 증권상에 명시된 예치보험료의 ()보다 적어서는 아니됩니다.

6. 해지조항

어떤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증권발행 당시의 요율과 계약 해지일까지 통지되는 월평균 가액을 기초로 한 보험료를 징구하며 보험계약 해지는 이 보험의 재조건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소재지별 보상한도액

구분	장소	보상한도액	요율

홍수 보장제외 조항 삭제

본 증권에 기재된 홍수 보장제외 조항에도 불구하고, 홍수로 인해 재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지진 보장제외 조항 삭제

본 증권에 기재된 지진 보장제외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진으로 인해 재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침하 보장제외 조항 삭제

본 증권에 기재된 침하 보장제외 조항에도 불구하고, 침하로 인해 재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소손해 보너스

증권상의 손해율이 ()% 미만일 경우, 다음의 방식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 % 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손해율은 이 증권에서의 모든 부문에 대한 총 지급보험금을 기반으로 한(지급준비금이 모두 종결된 이후의) 합산손해율을 의미합니다.

세계적 유행병/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본 증권 또는 본 증권의 배서 상에 반대되는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여타의 유기체와 그 변종 등을 포함하는 유행병, 세계적 유행병, 또는 공기중으로 전파되거나 접촉으로 인해 발병되는 감염병의 실제 발생, 인지, 공포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그로부터 유발되었거나, 그 결과로 발생하였거나, 관련이 있는 모든 성질의 손실, 피해, 비용 또는 경비는, 해당 손실에 대해 어떠한 다른 원인 또는 사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혹은 어떠한 순서를 두고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유행병, 세계적 유행, 또는 감염병에 대한 통제, 모니터, 방지, 억제, 회복을 목적으로 한 어떠한 조치의 이행이나 그 이행의 실패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그로부터 유발되었거나, 귀결되었거나, 관련이 있는 모든 성질의 손실, 피해, 비용 또는 경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염병 조항

1. 본 증권은 적용 가능한 모든 제조건 및 면책 사항에 따라 보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 또는 물리적 손상으로 인한 손실에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본 증권 상에 반대되는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은 전염병 또는 전염병의 공포 또는 위협(실제 또는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기인하거나, 동시 다발적으로 혹은 어떠한 순서를 두고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실, 손해, 청구, 비용, 경비 또는 기타 금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본 조항의 목적상 손실, 손해, 청구, 비용, 경비 또는 기타 금액에는 아래에 대한 청소, 해독, 제거, 모니터링 또는 테스트 비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1. 전염병 또는
 2.2. 해당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보험목적물

3. 본 조항에 사용된 바와 같이, 전염병은 임의의 유기체로부터 다른 유기체로 임의의 물질 또는 제제에 의해 전염될 수 있는 임의의 질병을 의미합니다.
 3.1 물질 또는 제제는 살아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 또는 이들의 변이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3.2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달 방법은 공기 전달, 체액 전달, 임의의 표면 또는 물체, 고체, 액체 또는 기체 또는 유기체 사이의 전달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3.3 질병, 물질 또는 제제는 인류 건강 또는 인류 복지를 손상시키거나 위협할 수 있거나, 또는 보험목적물의 악화, 가치 손실, 시장성 또는 사용 손실을 유발하거나 위협할 수 있습니다.

4. 본 조항은 모든 확장 담보, 추가 담보, 면책조항의 예외조항 및 기타 담보에 대해 일괄 적용됩니다.

그 외 모든 제조건 및 면책조항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JS2020-011
23 June 2020

사이버 면책 조항 (특정 사이버 공격 면책 삭제)

1. 아래 단락 2, 3, 5 에 의거하여 이 보험은 다음에 의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했거나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 손해, 책임 또는 비용을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1.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코드 또는 프로세스 또는 다른 전자 시스템의 고장, 오류 또는 오작동 또는;
 1.2. 컴퓨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악성 코드,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프로세스 또는 기타 전자 시스템의 사용과 작동.

2. 이 조항이 전쟁, 내전, 혁명, 반란, 폭동, 이로부터 발생하는 내전의 위험, 또는 교전 집단에 의한 혹은 교전 집단에 대한 적대적 행위, 테러 또는 정치적 동기로 행동하는 사람에 대한 행위를 담보하는 증권에 배서로 추가되는 경우,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기타 전자 시스템의 발사 및 / 또는 유도 시스템 및 / 또는 모든 무기의 발사 메커니즘에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그렇지 않았으면 담보되었을) 배제하기 위해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3. 단락 1 은 특정 사이버 공격에 의해 담보 재물에 야기된 물리적 손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면책삭제의 입증 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4. 상기 단락 3 에서 특정 사이버 공격이란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재산에 해를 끼치려는 동기에 의한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악성 코드,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프로세스 또는 기타 전자 시스템의 사용 또는 운영을 말합니다.

5. 본 증권의 다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본 증권에 담보된 재산은 전자적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JS2019-005
2019 년 11 월 22 일

제한적인 사이버 담보 조항 (특정 사이버 공격 면책 삭제)

1. 아래의 단락 3, 4, 6 에 의거하여 이 보험은 컴퓨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악성 코드,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프로세스 또는 기타 전자 시스템의 사용 또는 작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했거나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 손해 또는 비용을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이 조항이 첨부된 증권의 조건에 따라 본 보험은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세스 또는 기타 전자 시스템의 사용 또는 운영에 해를 끼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닌 경우 이러한 사용과 운영으로 인해 담보하는 재산에 발생하는 물리적 손실 또는 물리적 손상을 보상합니다.

3. 이 조항이 전쟁, 내전, 혁명, 반란, 폭동, 이로부터 발생하는 내전의 위험, 또는 교전 집단에 의한 혹은 교전 집단에 대한 적대적 행위, 테러 또는 정치적 동기로 행동하는 사람에 대한 행위를 담보하는 증권에 배서로 추가되는 경우,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기타 전자 시스템의 발사 및 / 또는 유도 시스템 및 / 또는 모든 무기의 발사 메커니즘에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그렇지 않았으면 담보되었을) 배제하기 위해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4. 단락 1 은 특정 사이버 공격에 의해 담보 재물에 야기된 물리적 손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면책삭제의 입증 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5. 상기 단락 4 에서 특정 사이버 공격이란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재산에 해를 끼치려는 동기에 의한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악성 코드,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프로세스 또는 기타 전자 시스템의 사용 또는 운영을 말합니다.

6. 본 증권의 다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본 증권에 담보된 재산은 전자적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JS2019-006
2019 년 11 월 22 일

해상 사이버 면책 조항

이 조항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본 보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선 본 조항이 우선합니다.

1 이 보험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에 의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야기 된, 손실, 손해, 책임 또는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1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코드 또는 프로세스 또는 기타 전자 시스템의 고장, 오류 또는 오작동

1.2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악성 코드,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프로세스 또는 기타 전자 시스템의 사용에 대한 피해를 입히기 위한 수단.

LMA5402
2019 년 11 월 11 일

해상 사이버 특별 조항

1. 아래 3 항에 한해서만, 이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컴퓨터, 컴퓨터의 피해를 입히기 위한 수단으로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악성 코드, 컴퓨터 바이러스, 컴퓨터 프로세스 또는 기타 전자 시스템의 사용 또는 운영에 의해 또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손해, 책임 또는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이 증권에 부가된 조건, 제약, 면책 등에 한하여,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컴퓨터 처리 또는 전자기적 시스템의 사용 또는 작동은, 해를 끼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본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이 조항이 전쟁, 내란, 혁명, 반란, 사회적 갈등, 적대적 행위, 테러리즘, 정치적 동기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증권에 배서로 추가되는 경우, 위 1 항은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여타 전자기적 시스템, 무기 혹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 등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면책하기 위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LMA5403
2019 년 11 월 11 일

코로나바이러스 면책 조항

이 보험은 하기 사유로 인해 발생 혹은 발현된 손해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A)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B) 극심한 호흡기 질환 코로나바이러스 2
C) 코로나바이러스 2 의 변형 및 변종
D) 상기 A,B 혹은 C 로 인한 위협

LMA5391
2019 년 11 월 11 일

코로나바이러스 면책 조항
(해양 및 에너지배상 약관 전용)

이 조항은 가장 중요하며,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이 보험에 포함된 모든 사항보다 우선합니다.

이 보험은 다음 보장을 제외합니다:
1) 아래의 전염 또는 전염이라는 주장이 제기됨으로써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손상, 책임 및 비용
a)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COVID-19);
b)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 (SARS-CoV-2); 혹은
c) SARS-Cov-2 의 돌연변이 또는 변형;
또는 위의 a), b) 또는 c)에 대한 두려움이나 위협;
2) 위의 a), b) 또는 c)에 대해 식별, 청소, 해독, 제거, 모니터링 또는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책임 및 비용
3) 위의 a), b) 또는 c) 혹은 이에 대한 두려움이나 위협의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손실, 고용 손실, 사업 중단, 시장 손실, 지연 또는 간접적 금융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

이 보험의 다른 모든 조항, 조건 및 제한 사항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LMA5395
2020 년 4 월 9 일

전염성 질병 면책 조항 (화물)

1. 이 보험의 반대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보험은 전염병 또는, 실제 또는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두려움 또는 위협으로부터 어떠한 특성이든 기인하거나, 기여하였거나, 발생하였거나 이와 관련하여, 동시에 기인한 다른 원인이나 사건 또는 그 순서와는 관계 없이, 어떠한 손실, 손상, 책임, 청구 및 비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이 보험에서 정의하는 전염성 질병은 임의의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물질 또는 제제를 통해 전염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의미합니다.

2.1. 물질 또는 제제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 또는 이의 모든 변형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2.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파 방법은 공중 전파, 체액 전파, 표면이나 물체, 고체, 액체, 기체 또는 유기체 간의 전파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3. 질병, 물질 또는 제제는 신체적 상해, 질병, 인간의 건강, 복지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유발하거나 위협할 수 있습니다.

JC2020-011
2020 년 4 월 17 일

갱신 및 재검토

전체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증권은 처음 12 개월에 대하여 발행됩니다. 검토일에, 보험사는 다음 조건에 따라 다음 12 개월간의 보험기간에 대해 다시 서명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보험사는 지속적인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일 45 일 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는 만약 아래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음 12 개월간의 보험기간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서명을 거절하거나, 조정된 요율을 수정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조건 및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a. 리스크의 근본적 변화로 인해 보험사 판단으로 그 기간에 대해 재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b. 리스크가 ()%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c. ()를 초과하는 사고(준비금, 지급보험금 포함)가 발생한 경우

이 증권은 증권이 적용되는 지역의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사의 30 일 통보 조건으로 종료될 수 있으며, 그 경우 보험사는 계약의 취소일부터 종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비례로 보험료를 환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구외운송 부담보 조항

본 보험 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운송 이전, 보험사에게 통지하고 추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한 구외 운송에 대해 담보하지 않습니다.

사고협조조항

이 증권상의 상충되는 부분에 관계없이, 이 조건은 모든 보상책임에 다음과 같이 우선한다.

a) 원수보험자는 보상 가능한 클레임을 야기할 수 있는 사고 발생을 인지하였을 경우 실행가능한대로 최대한 빨리 재보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b) 원수보험자는 재보험자에게 사고에 관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손해사정인, 조사자, 기타 전문가의 선정과 클레임의 협의, 조정, 확정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서 지정된 손해사정인, 조사자 또는 기타 전문가들은 원수보험자와 재보험자를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모든 보수, 비용, 경비 및 기타 지불금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간에 비례적으로 부담될 것이다. 국내 보험사에 의해 계산된 초기 준비금이 ()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 보험사 단독으로 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이버손해 제한적 면책 특별약관

1. 회사는 약관상 반대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사항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손실, 피해, 배상책임, 비용 또는 경비는 그 성질을 불문하고 보상하지 않습니다.
1.1 제 2 조에 해당하지 않는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 가용성 또는 운영에 대한 손실, 변경, 피해나 감소
1.2 모든 데이터의 사용이익 상실, 기능 손실, 복구, 대체, 복원 또는 재생산(데이터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 등)

2. 회사는 이 보험증권에서 담보하는 재물에 다음과 같은 위험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물리적 피해와 그로 인한 직접적인 시간 요소 손실은 본 계약상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나 차량과의 충돌 또는 그로부터 낙하되는 물체에 의한 피해, 강풍, 우박, 토네이도, 싸이클론, 허리케인, 지진, 화산폭발, 쓰나미, 홍수, 결빙, 적설하중에 의한 피해

3. 컴퓨터 시스템은 모든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시스템, 전자 장치(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등), 서버, 클라우드 또는 마이크로컨트롤러 등과 같은 시스템이나 구성 장치, 관련 입출력 장치, 데이터 저장 장치, 네트워킹 장비, 또는 백업 장치를 의미합니다.

4. 데이터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 접근, 처리, 전송, 저장이 가능한 형태로 기록 및 전송되는 모든 종류의 정보, 사실, 개념, 코드를 의미합니다.

5. 시간 요소 손실은 기업휴지 손실, 간접기업휴지 손실 또는 기타 간접 손실을 의미합니다.